

연구서 2018-01

#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주요 원칙

박아란·이나연·정은령

연구서 2018-01

##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주요 원칙

책임연구 박아란(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 이나연(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기나다순) 정은령(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SNU팩트체크센터장)

보조연구 곽은아(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과정 수료)

발행인 민병우

편집인 김낭기

발행일 2018년 9월 7일 초판 제1쇄 발행

### 한국언론진흥재단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전화 (02) 2001-7742 팩스 (02) 2001-7740

[www.kpf.or.kr](http://www.kpf.or.kr)

편집 세창출판사

037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88 냉천빌딩 4층

전화 (02) 723-8660 팩스 (02) 720-4579

<http://www.sechangpub.co.kr/>

인쇄 (사)한국장애인e-Work협회

073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9 중앙빌딩 411호

전화 (02) 783-0800 팩스 (02) 783-0750

이 책에 실린 내용은 본 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닌 필자의 연구 결과임을 밝힙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8

ISBN 978-89-5711-497-1 93070

<b>01 팩트체크란 무엇인가</b>	<b>7</b>
1. 팩트체크의 기원과 확산	7
2. 팩트체크 저널리즘 원형으로서의 미국 팩트체킹	8
1) 팩트체크닷오르그(FactCheck.Org) · 10      2) 폴리티팩트(PolitiFact) · 10	
3) 팩트체커(FactChecker) · 11	
3. 전통언론과 NGO모델이 공존하는 유럽	12
1) 뉴스룸 모델과 언론인 · 12      2) 비정부기구와 개혁가(reformer) 모델 · 13	
3) 전문가(experts) 모델 · 14	
<b>02 팩트체크의 규범</b>	<b>17</b>
1. 팩트체크 국제 준칙	17
2.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특징	19
1) 검증대상의 선정 · 19      2) 조사과정 · 22	
3) 기사작성 · 23      4) 판정(verdict) · 23	
<b>03 팩트체크 기사 분석: 연구방법</b>	<b>27</b>
1. 자료 수집	27
2. 주요 변인 측정	28
1) 형식 변인 · 28      2) 내용 변인 · 29      3) 코딩 및 신뢰도 측정 · 33	
<b>04 팩트체크 기사 분석: 연구결과</b>	<b>35</b>
1. 기술적 특징	35
1) 언론사별 팩트체크 · 36      2) 무엇을 검증하였나 · 37	
3) 판정의 결과 · 37	
2. 주요 결과	39
1) 형식적 특징 · 39      2) 내용 변인 · 42	
3. 연구결과의 요약	58
1) 형식 측면 · 58      2) 내용 측면 · 59      3) 불편부당성 · 60	

## 05 팩트체크와 법률적 개념 61

1. 팩트체커 인터뷰	61
2. 관련된 법률적 개념	68
1) 사실(事實)과 의견(意見) · 69	2) 기사의 객관성 · 72
3) 기사의 진실성 · 73	4) 맺으며 · 76

## 06 팩트체크 가이드라인 79

1. 새로운 저널리즘 양식으로서의 팩트체크 기법	79
1) 검증 대상은 사실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80	
2) 조사(research)는 발언자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 80	
3) 조사의 출처는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 · 81	
4) 증거는 물적 토대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 81	
5) 최대한 익명 인용을 배제한다 · 81	
6) 자료의 출처를 독자들에게 투명하게 밝힌다 · 82	
7) 판정결과는 가장 나중에 밝힌다 · 82	
8) 오류는 공개적으로 즉각 수정한다 · 82	
2. 팩트체크 기사 사례	83
1) KBS의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미세먼지 관련 상대 후보 공략 검증 · 83	
2) 뉴스톱의 서초구청장 당선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공약이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팩트체크 · 86	
3. 맺으며	88

참고문헌 90

## 표·그림 차례

표 2-1	IFCN 준칙	18
표 2-2	미국 3대 팩트체크 기관 검증절차 및 원칙	20
표 4-1	주요 언론사별 팩트체크 건수 및 결과 비교	36
표 4-2	팩트체크 판정의 결과	37
표 4-3	발언자를 기준으로 한 검증결과 분석	38
표 4-4	발언의 진술문 주체를 기준으로 한 결과 분석	38
표 4-5	팩트체크 명시 언론사	39
표 4-6	누구의 발언을 검증하였는가?	39
표 4-7	검증 대상이 된 사실(Fact)의 출처	40
표 4-8	발언의 근거 자료 요청	41
표 4-9	검증 대상의 속성	42
표 4-10	팩트체크 기사의 길이	43
표 4-11	팩트체크 기사에 사용된 전체 취재원 숫자	44
표 4-12	사실·사실적 의견에 대한 검증	45
표 4-13	이견 취재원을 포함하지 않은 팩트체크 기사	48
표 4-14	언론사별 익명 취재원이 사용된 기사의 비율	50
표 4-15	수정 내용의 구체적 공개	51
표 4-16	독자성을 갖춘 기사	52
표 4-17	주요 언론사가 검증한 발언자의 빈도	54
표 4-18	주요 언론사가 검증한 진술문 주체의 빈도	55
표 4-19	교차검증의 기술적 특징	56
표 5-1	뉴스톱의 팩트체크 원칙 규정	62
표 6-1	팩트체크의 주요 8개 원칙	83
그림 1-1	듀크 리포터스 랩이 집계한 전 세계 팩트체크 기관 현황	8
그림 1-2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새빨간 거짓말(Pants on Fire)’로 판정한 폴리티팩트의 ‘진실검증기(Truth-O-Meter)’	11
그림 1-3	워싱턴포스트의 피노키오 테스트	11



# 팩트체크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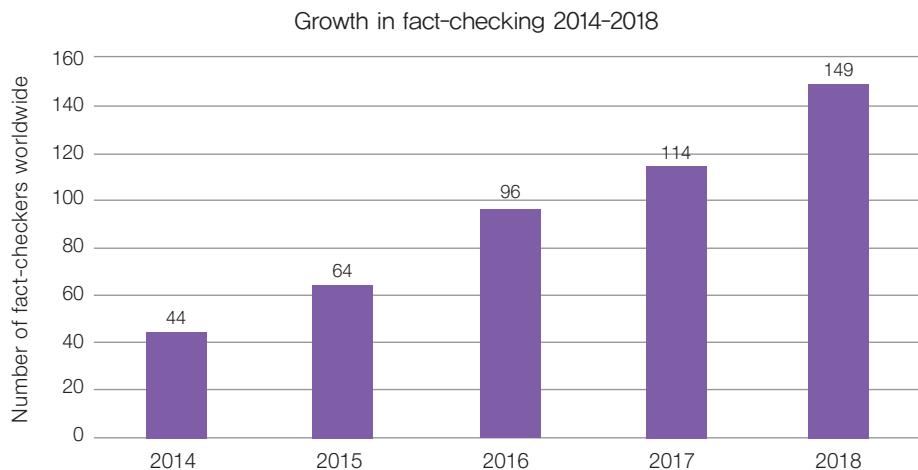
## 1. 팩트체크의 기원과 확산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세계 각국에서 정치인들의 발언을 중심으로 그 사실성을 검증하는 팩트체크 기관의 창설이 확산되고 있다. 2014년부터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팩트체크 기관의 수를 집계해 온 미국 뉴크대학교 뉴크 리포터스 랩(Duke Reporters' Lab)에 따르면 2014년 44개였던 팩트체크 기관은 2018년 2월 현재 53개국의 149개로 늘어났다. 2017년 한 해에만 35개의 기관이 새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47개 기관이 팩트체크를 처음 시작했던 미국에 속해 있지만, 프랑스(7개), 영국(6개) 등 유럽 52개, 브라질(8개) 등 남미 대륙 15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22개, 아프리카 4개 등 확산은 전 세계적인 양상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번지기 시작한 팩트체크 운동에 불씨가 된 것은 미국의 전통적인 언론이 벌인 ‘저널리즘 혁신 운동’이다. 세계 각국의 신생 팩트체크 기관들은 미국의 팩트체크 기관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정립해 온 팩트체크의 규범, 방법론을 전범으로 삼는다. 따라서 미국에서 팩트체크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한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개념, 진행 양상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림 1-1 듀크 리포터스 랩이 집계한 전 세계 팩트체크 기관 현황



## 2. 팩트체크 저널리즘 원형으로서의 미국 팩트체킹<sup>01</sup>

미국 언론이 정치인들의 발언을 검증하는 팩트체킹 저널리즘이라는 새로운 저널리즘 실천양식을 ‘발명’할 수 있었던 기저에는 저널리즘의 누적된 실패에 대한 반성이 있었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목격한 뒤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진실성(truthfulness)은 결코 정치적 덕목의 일부였던 적이 없다”고 갈파했던 것처럼 미국의 현대사에서는 매카시즘, 베트남전, 워터게이트, 이라크전 등 중요한 공적 사안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인이 국민들에게 사실을 숨기거나 공공연한 거짓말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는 일이 반복되었지만, 언론은 오랜 시간 이를 밝혀내지 못하고 무력하게 받아쓰기만을 반복하는 경험이 누적되었다.

언론의 거듭되는 실패를 목격하면서, 워싱턴포스트의 노장 기자 데이비드 브로더는 “기자들이 정치인들의 발언이 진실인가를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칼럼을 수년에 걸쳐 게재함으로써 팩트체킹에 불을 당겼다(Adair & Holan, 2011; Dobbs, 2012). 브로

---

01 이 글에서는 팩트체크 저널리즘, 팩트체크, 팩트체킹을 언론사들이 수행하는 현대적인 의미의 팩트체크 행위를 지칭하는 단어로 교차적으로 사용하였다.

더는 미국 언론의 전통적인 규범인 객관주의 저널리즘의 정치보도에 대한 한계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유권자들은 ‘그는 이렇게 말했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고(He says, she says)’라는 보도 외에는 (정치적 판단의 근거로 삼을 만한) 아무런 결론이 없는 상태”에 내던져져 왔다(Spivak, 2010)고 비판했다. ‘사실 그 자체가 말하게 하라(Let facts speak for themselves)’라는 객관주의 보도의 고전적 규범을 넘어서는 진실의 판정자(the arbiter of truth) 역할을 언론이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기존의 언론이 수행해 온 팩트체킹이 화자가 말한 내용을 정확하게 읊기는 것을 팩트체킹이라고 간주한다면, 새로운 팩트체킹은 인용구 안의 말이 사실인가를 규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구별할 수 있다(Graves & Glaisyer, 2012). 화자의 뜻을 훼손하지 않고 정확하게 ‘받아쓰기’ 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팩트체킹이 아니라 화자가 한 말 그 자체의 진실성 여부를 가리는 것이 현재의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된 정치 팩트체킹의 핵심이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대부분의 기자들은 팩트체킹에 나서는 것을 주저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 아덴버그 공공센터에 팩트체크닷오르그(FactCheck.Org)를 창설한 브룩스 잭슨 전 CNN 기자는 이에 대해 “전통적으로 배워 온 객관주의 저널리즘의 작법과는 달리, 어떤 발언이 독자를 오인으로 이끈다는 평가를 내려야 하고, 정치인들의 발언 중에 무엇이 참이거나 거짓이라고 판정을 내려야 한다는 데 부담을 느꼈기 때문”(Graves, 2016, p.59)이라고 설명한다. “팩트체킹은 끊임없이 언론인들을 단단한 사실(hard fact)이라는 기반으로부터 내동댕이쳐서 평가(evaluation), 해석(interpretation), 의견(opinion)이라는 진창에 빠지게”(Graves, 2016, p.53) 하는 일이었다.

미국 언론에서 2004년은 ‘팩트체크의 해(year of the factcheck)’로 명명될 만했다. 2003년 말, 펜실베이니아 대학에 팩트체크닷오르그가 창설되었고, 그해 대선에서 뉴욕타임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ABC 뉴스 등이 팩트체크를 선보였다.

팩트체크닷오르그에 이어 2007년에는 폴리티팩트(PolitiFact)가 창설되었고, 워싱턴포스트도 팩트체커(FactChecker)를 선보였다. 이로써 오늘날에도 팩트체크의 국제적인 규범을 제안하고 혁신을 선도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의 3대 팩트체크 기관이 정립됐다. 세 기관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전통적인 저널리즘 기반의 팩트체킹이 어떤 양태로 발전되어 갈 수 있는가를 보여 준다.

## 1) 팩트체크닷오르그(FactCheck.Org)

팩트체크닷오르그는 대학과 현역 저널리스트들이 결합한 모델이다. 펜실베이니아 대학 아넨버그 공공정책연구소에 자리 잡고 있는 팩트체크닷오르그는 비정파, 비영리 조직으로서 정치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미국 정치에서 벌어지는 거짓과 혼돈을 팩트 체킹을 통해 줄이는 것을 자신들의 임무로 밝히고 있다. 팩트체크닷오르그는 비정파 성, 비영리성을 지키기 위해 정당이나 기업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다.<sup>02</sup> 재원은 대부분 개인 후원금과 아넨버그 정책연구소의 기금으로 충당한다. 팩트체크닷오르그에서 상근직으로 팩트체킹에 종사하는 5명의 기자들은 대부분 10년 이상 현장에서 근무한 숙련된 기자들이다.

## 2) 폴리티팩트(PolitiFact)

폴리티팩트는 플로리다에 기반을 둔 신문인 탐파베이타임스의 기획 프로젝트로 2007년 만들어졌다. 2008년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팩트체킹의 공로를 인정받아 2009년 풀리처상을 수상함으로써 성가를 높였다. 2018년 현재 미국의 저널리즘 연구·교육기관인 포인터 인스티튜트(Poynter Institute)에 소속돼 있다.

폴리티팩트는 팩트체킹이 언론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현존하는 답이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광고, 폴리티팩트가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도록 파트너 관계를 맺은 언론사들로부터 들어오는 수입, 테모크라시 펀드(Democracy Fund) 등 공적 기관의 기부금 등으로 재정자립을 이루고 있다. 2017년부터 Truth Squad라는 대대적인 소액 후원자 모집운동을 벌여 개인 후원 제도를 활성화하기도 했다.

폴리티팩트는 자사의 고유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진실검증기(Truth-O-Meter)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후발 팩트체킹 사이트들이 이를 변형해 사용하고 있다.

폴리티팩트의 상근기자들은 10~12명(2018년 7월 현재)이다. 전원 폴리티팩트가 첫 직장이 아닌 경력기자들이다.

---

02 기업 후원의 예외는 2017년 이후 페이스북에 게시되는 거짓뉴스의 사실성 여부를 판정한 뒤 받는 후원금이다. 2017년 페이스북으로부터 팩트체크닷오르그가 받은 후원금은 26,402달러였다.

**그림 1-2**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새빨간 거짓말(Pants on Fire)’로 판정한 폴리티팩트의 ‘진실검증기(Truth-O-Meter)’



### 3) 팩트체커(FactChecker)

워싱턴포스트의 팩트체크 고정란인 팩트체커는 한 언론사가 어떻게 팩트체크를 자사의 대표적 프로젝트로 정착시키는가를 보여 주는 사례다. 워싱턴포스트의 팩트체크는 2008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2007년 9월 첫선을 보였으며 고정란이 된 것은 2011년 1월부터다. 웹사이트를 통해 주 중에 매일 한 건씩 팩트체크가 게시되며, 이외는 별도로 신문 일요판에 컬럼이 게재된다.

팩트체커 팀을 지휘하는 글렌 케슬러는 외교정책, 경제정책, 백악관, 의회 등을 담당하며 워싱턴 정가 취재 경력만 30년이 넘는 베테랑 기자다. 제프 베조스가 워싱턴포스트를 인수한 뒤 팩트체크 강화를 지시했고, 그에 따라 취재 인원이 늘어나 2018년 8월 현재는 동영상 팩트체크를 담당하는 기자까지 3명이 한 팀을 이루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의 팩트체커는 독특한 진실성 검증 측정기로 ‘피노키오 테스트(Pinocchio Test)’를 운영하고 있다. 팩트체킹된 모든 사실들에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등급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1개부터 4개까지의 피노키오를 부여해 진실성의 정

**그림 1-3** 워싱턴포스트의 피노키오 테스트

피노키오의 숫지를 통해 진실성의 정도를 가린다. 검증 대상이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판정될 경우, 4개의 피노키오를 부여한다.



도를 판정한다. 검증대상이 ‘의심할 수 없는 진실’이라고 판정될 때는 제페토 체크마크(Geppetto Checkmark)를 부여한다.

### 3. 전통언론과 NGO모델이 공존하는 유럽

유럽의 팩트체킹 사이트들에 대해서 연구한 그레이브스와 체루비니(Graves & Cherubini, 2016)는 유럽의 팩트체킹 사이트들은 뉴스룸 모델과 비정부기구(NGO) 모델로 나뉠 수 있으며, 다시 이를 지향하는 목표와 정체성으로 구분해 주체를 나눴을 때 i) 언론인, ii) 개혁가, iii) 전문가로 세분화된다고 밝혔다. 유럽에서는 전통적인 언론이 팩트체킹을 주도하는 미국과 다르게 비정부기구 모델이 뉴스룸 모델을 상대적으로 압도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보아 서유럽과 북유럽은 전통적인 미디어들이 주도하는 뉴스룸 모델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구 소비에트 연방의 지배하에 있었던 동유럽과 남유럽 지역은 비정부기구 모델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 1) 뉴스룸 모델과 언론인

팩트체커로서 언론인은 시민들이 자신을 둘러싼 중요한 정치사회적 결정들에 활용할 수 있는 식견을 갖추도록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라는 전통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팩트체킹을 수행한다.

유럽의 전통적인 언론 중 미국과 같은 유형의 정치 팩트체킹이 다뤄진 효시는 영국 채널 4(Channel 4)가 2005년 의회 선거를 검증한 것이다. 채널 4는 2010년부터 FactCheck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리베라시옹이 독립적인 팩트체크 사이트로서 데장톡스(Désintox)를 2008년 시작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르몽드는 2009년부터 데코되르(Décodeurs)를 운영하고 있다. 스웨덴의 메트로(Metro), 네덜란드의 코레스폰텐트(Correspondent)도 언론사가 운영하는 정기적인 팩트체킹 사이트다.

뉴스룸 모델의 강점은 광범위한 수용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페인의 텔레비전 네트워크인 라 섹스타(La Sexta)에서 저명한 언론인 아나 파스톨이 진행하는 일요일 저녁 팩트체킹 프로그램인 엘 오브레티보(El Objetivo)는 평균 150만~200만 명이 시청

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탈리아의 국영방송인 라이(RAI)가 운영하는 주말프로그램 비루스(Virus)는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독립적인 팩트체크 기관인 파젤라 폴리티카(Pagella Politica)와 협력해 팩트체크 코너를 운영하면서 평균 시청자 100만 명을 유지하고 있다.

진통적인 뉴스룸이 팩트체크를 시도하는 것은 정체상태인 수용자층을 확대하는 데 돌파구가 되기도 한다. 브렉시트의 와중에서 채널 4의 FactCheck는 “EU에 남게 되면 매년 영국인들이 일인당 252 파운드를 부담해야 한다”는 탈퇴론자들의 주장을 사실검증한 비디오 클립 하나로 페이스북에서 3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Mantzarlis, 2016).

프랑스의 리베라시옹이 운영하는 데장톡스의 경우, 리베라시옹의 종이신문 부수는 8만부에 불과하지만 데장톡스의 온라인 사이트 방문객은 매월 수백만 명을 넘는다 (Graves & Cherubini, 2016). 리베라시옹은 2017년 9월 데장톡스를 수용자 요구형의 팩트체크로 바꾸는 Check News(<http://www.liberation.fr/checknews>,100893)를 선보였다. ‘무엇을 팩트체크할 것인가’라는 검증 대상 선정의 문제는 늘 검증 주체의 선택 편향(selection bias)이라는 논란에 휩싸여 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데장톡스는 인터넷상에서 이용자들로부터 직접 질문을 받아 이를 검증하는 CheckNews 서비스를 시작했다. 웹사이트 개설 이후 2018년 7월 현재 이용자들이 데장톡스의 기자들에게 검증을 요구한 질문 중 1600여 개가 검증되어 답이 게시됐다. 질문들은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헌법에서 삭제된다는 것이 사실인가?”라는 정치사회적인 것부터 “맥주 부족으로 프랑스가 정말로 위협받고 있는가?”라는 실생활의 문제까지 다양하다. CheckNews의 사례는 단지 선택 편향의 논란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팩트체킹이 이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통해 독자 확대의 한 활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2) 비정부기구와 개혁가(reformer) 모델

발칸반도와 구 소비에트 연방의 지배하에 있었던 동구권 국가들의 비정부기구는 부패와 싸우고, 시민 참여를 북돋우며, 정치가들이 정치적 책무(political accountability)를 다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 가운데, 시민 운동의 일부로서 팩트체킹을 진행한다. 이들은 자신들을 저널리스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팩트체킹을 사회의 민주적 진보를 위한 도구로 생각하며, 팩트체킹의 제1의 목적을 정치적 개혁으로 삼는다.

우크라이나의 FactCheck Ukraine의 운영자들은 “팩트체킹의 목적은 보통사람들이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의 발언을 감시하고 허위정보와 싸울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갖출수록,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Graves & Cherubini, 2016)이라고 그들의 목적을 밝힌다.

개혁가 모델의 팩트체커들은 팩트체킹과 여타의 사회적 프로젝트들을 함께 연결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인다. 일례로 비정부기구인 CRTA(Center for Research,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에 의해 2009년 창설된 세르비아의 이스티노미어(Istinomjer)는 국가시험에서 대규모 부정행위가 벌어진 직후 이 사건과 관련해 40개에 이르는 팩트체킹을 수행한 것은 물론 이에 대한 국민청원과 거리 시위를 조직해 교육부 장관이 사임에 이르도록 했다. 이처럼 개혁가 모델은 정보의 전달에 그치지 않고, 정보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관심을 둔다.

### 3) 전문가(experts) 모델

스스로를 언론인으로도 사회운동가로도 규정하지 않으면서 독립적이고 비당파적으로 팩트체킹을 수행하는 제3의 그룹이 전문가 모델이다. 이들은 형식적으로 비정부기구의 성격을 띠면서 때로 싱크탱크로 자신들의 역할을 규정하는 한편, 전통적인 매체와 협력하여 사실검증한 결과를 확산한다는 측면에서 저널리즘적인 실천에도 참여한다.

전문가 모델에 속하는 팩트체커들은 학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책 전문가들이다. 경제, 법 등의 팩트체킹에 강한 이탈리아의 파젤라 폴리티카의 경우 해당 분야의 연구자이거나 국제기구에서 컨설턴트로 활동했던 경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팩트체커로 활동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전문성을 살려, 이탈리아의 정책이 논의되는 과정을 객관적인 정보들을 통해 감시한다.

2010년에 창설된 영국의 풀팩트(Full Fact)는 싱크탱크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이들은 정치인들은 물론 언론에 대한 팩트체킹을 하며, 특히 오류를 수정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풀팩트는 구성원들이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도 금지할 만큼 불편부당성을 강조하면서 “정보의 질을 높이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정부의 각 부처, 연구기관들과 함께 일하며, 필요한 경우 오류의 수정을 요구한다”고 자신들의 사명을 밝힌다.

유럽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자들과 박사급의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팩트체킹 사이트로는 커버세이션(Conversation)을 빼놓을 수 없다. 커버세이션에서 팩트체킹이 되어야 할 질문은 직업적인 기자들이 선정하고 배열한다. 그러나 답을 쓸 수 있는 저자의 자격은 최소한 박사과정을 수료한 연구자 혹은 대학교수들이다. 커버세이션에 참여하는 저자가 답을 썼다고 해서 바로 게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학술지 심사과정처럼 그 분야의 다른 전문가들이 익명으로 리뷰를 한 뒤에야 게시가 가능하다.

전통적인 언론사들을 주축으로 저널리즘 혁신 운동 성격으로 출현한 것이 미국의 팩트체킹이라면, 유럽의 팩트체킹은 전통적인 언론사들의 활동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비정부조직들이 사회개혁 운동의 일환으로 팩트체킹을 하거나 사회개혁가도, 언론인도 아닌 독립적인 전문가들이 공공 목적의 싱크탱크처럼 팩트체킹을 시행한다. 어느 경우든지 목표는, 사실검증을 통해 정치인들에게 책임 있는 발언을 하게 하는 한편 공중을 오도할 수 있는 의도적인 그릇된 정보(disinformation)와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가 유통되는 것을 억지함으로써 공적인 토론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다.



## 팩트체크의 규범

### 1. 팩트체크 국제 준칙

팩트체크의 과정은 ‘무엇을 검증할 것인가’로부터 시작해 검증한 결과를 기반으로 사실성을 가려내고 이에 대한 판정을 정보 이용자들에게 제시하는 것으로 끝난다. “사실이 스스로 말하게 하라(Let the facts speak for themselves)”는 객관주의 저널리즘의 규범에 비추어 볼 때, 사실을 검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에 대해 거짓부터 사실까지 직관적인 이미지를 동원해 등급을 매긴 판정까지 내리는 것은 팩트체크를 한 당사자의 주관적인 개입이라고 평가될 수도 있다.<sup>03</sup> 이러한 이유로 검증대상을 선정하는 데 선택 편향(selection bias)이 있다거나, 팩트체크의 결과가 과학적 객관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은 끊이지 않는다. 팩트체크를 통해서는 진실을 검증할 수 없다는 인식론적 비판까지 제기된다(Uscinski & Burtler, 2013).

포인터재단에 기반을 둔 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International Fact Checking Network:

03 모든 팩트체킹 사이트들이 폴리티팩트의 ‘진실 검증기(Truth-O-Meter)’와 같은 직관적인 판정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영국의 팩트체크 기관인 풀팩트는 “등급 매기기가 첫눈에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어떠한 주장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어떤 주장이 사실과 거짓 중의 하나가 아닌 것은 왕왕 있는 일이기 때문에 등급 매기기가 사안의 전체적인 그림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시각적으로 등급을 매겨 제시하지 않는다.

IFCN)는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면서 팩트체크의 정치적 불편부당성, 독립성, 투명성 등을 지키기 위해 2016년 팩트체크의 국제기준이라 할 수 있는 「준칙(Code of Principles)」을 제정했다. 준칙은 크게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표 2-1〉 참조).

표 2-1 IFCN 준칙

1원칙	불편부당성과 공정성 준수
	우리는 모든 팩트체크에 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어느 한쪽에 편중된 팩트체킹을 하지 않는다. 어떠한 팩트체킹이든 동일한 과정을 거치도록 하며 증거가 결론을 이끌어내도록 한다. 팩트체크하는 이슈에 관해 어떠한 정책적 입장도 취하지 않으며 응호하지 않는다.
2원칙	정보원 투명성 준수
	우리는 독자들이 우리가 발견한 것들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는 정보원(source)의 개인적인 안전이 침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원을 최대한 자세히 밝혀 독자들이 우리가 수행한 것을 동일하게 반복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원을 밝힐 수 없을 때는 가능한 자세하게 배경정보를 제공한다.
3원칙	재정과 조직에 관한 투명성 준수
	우리는 재정의 원천을 투명하게 밝힌다. 외부 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았을 때, 지원자가 우리의 팩트체킹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보증되어야 한다. 우리는 조직 안의 주요 인사들의 전문적인 배경을 자세히 밝히며, 우리의 조직 구조와 법적 지위에 대해 설명한다. 우리는 독자들이 어떻게 우리와 소통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한다.
4원칙	방법의 투명성 준수
	우리는 어떻게 검증 대상을 선정하고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술하고 편집하고 발행하고 수정하는지 방법론에 대해 설명한다. 우리는 독자들이 검증해야 할 주장들을 보내기를 권장하며 우리가 왜, 어떻게 팩트체킹을 하는지 투명하게 밝힌다.
5원칙	공개적이고 정직한 수정 준수
	우리는 수정 정책을 공개하며 이를 꼼꼼히 준수한다. 우리는 수정원칙에 따라 명백하고 투명하게 수정하며 독자들이 수정된 안을 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할 방법을 찾는다.

2018년 7월 현재 전 세계 54개 팩트체크 기관이 IFCN의 준칙을 준수하는 기관으로 승인을 받았다. 페이스북은 2017년부터 미국 등에서 IFCN의 준칙을 준수하는 기관으로 승인받은 팩트체크 기관들이 페이스북에 게시된 정보 중 허위정보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한 판정을하도록 의뢰하고 있다. 2018년 7월 현재 한국에서 팩트체크를 시행하는 언론사 중 IFCN 준칙을 준수하는 기관으로 승인받은 사례는 없다.

## 2.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특징

팩트체킹에 대해 자주 제기되는 회의적인 질문은 “팩트체크가 언론이 기준에 해 오던 사실 검증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다. 저널리즘 활동의 기초가 사실확인인 만큼 모든 저널리즘 활동이 팩트체킹 저널리즘이 아니냐는 무용론도 제기된다.

팩트체킹 저널리즘은 그 수행과정에서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인 객관성, 공정성 등을 준수하지만, 검증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조사과정, 판정 등은 일반적인 저널리즘 수행과 차이가 있다. 즉 검증 대상의 선정(selection) → 검증 대상의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research) → 검증한 사실의 기술(writing & editing) → 판정(verdict)의 전 과정에서 팩트체크 저널리즘과 저널리즘의 일반적인 관행은 유사성과 동시에 차이를 갖는다. 미국의 3대 팩트체크 기관으로 꼽히는 팩트체크닷오르그, 폴리티팩트, 워싱턴포스트의 팩트체커가 각각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밝힌 원칙들을 통해 팩트체크 저널리즘과 일반적인 저널리즘 수행과정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살펴본다

### 1) 검증대상의 선정

#### ① 사실 검증

팩트체크닷오르그, 폴리티팩트, 워싱턴포스트의 팩트체커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검증대상이 의견(opinion)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이다. 정치인의 발언을 검증 할 때도 의견을 떠받치고 있는 개별적인 사실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표 2-1 참조). 사실 가운데도, 정치인의 우발적인 말실수 등은 제외하며, 유권자들의 삶과 관련성(relevance)이 높은 것을 고른다. 팩트체크에서 강조되는 것은 실제로 어떠한 말을 했는가와 어떤 맥락에서 그러한 말을 했는가이다. 발언 그 자체와 맥락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Words matter, context matters)는 점이 강조된다.

#### ② 선정의 불편부당성

무엇을 팩트체크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문제는 팩트체커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지는 도전적인 과제다. 팩트체크를 하는 저널리스트들은 검증 대상 선정에 무선표집(random sampling) 등의 사회과학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는다. 검증대상 선정에는 뉴스거리를 게

이트키핑할 때와 같은 뉴스 가치판단(news judgement)을 적용한다.<sup>04</sup> 폴리티팩트, 워싱턴포스트의 팩트체커, 팩트체크닷오르그는 공통적으로 공화당과 민주당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팩트체크를 강조한다. 그러나 팩트체커들이 산술적인 균형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일례로 워싱턴포스트의 팩트체커는 자신들의 활동원칙에서 “백악관과 의회를 모두 다수당이 장악했을 경우, 다수당에 대해 더 많은 팩트체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정량적인 평가가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불편부당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sup>05</sup>

### ③ 공개자료(on the record) 이용

일상적으로 생산되는 문서화된 전사(轉寫)자료(routine transcription)는 팩트체크의 물적 토대라고 할 수 있다. 팩트체크를 하는 저널리스트들은 의정활동 과정에서의 정치인들의 발언뿐만 아니라,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 트위터, 페이스북 포스팅 등의 소셜미디어 기록, 보도자료, 선거운동 자료집 등을 포괄하여 검증대상을 선정하고 조사한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생산되는 문서화된 자료들이다.<sup>06</sup>

**표 2-2** 미국 3대 팩트체크 기관 검증절차 및 원칙

	팩트체크닷오르그	폴리티팩트	팩트체커
검증대상 선정 (sele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 선거시기에는 후보 와 상원의원 발언 중심.</li> <li>대선 시기가 아닐 경우 의회 중심으로 주제 선정</li> <li>- 토크쇼/TV광고/C-SPAN/ 대통령 발언/CQ의 문서 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설/기사/보도자료/캠페인 자료/소셜미디어/독자의 의견 등을 검증 자료로 검토</li> <li>- 검증이 가능한 사실인지, 오도(misleading)될 가능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증 가능한 사실만을 선정. 때때로 정치적 수사 (rhetoric)의 근원을 조사.</li> <li>- 유권자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슈에 주목. 중요성과 뉴스가치가 있는</li> </ul>

04 폴리티팩트의 창설자인 빌 아데어는 이에 대해 “우리는 뉴스 판단에 따른다. 우리는 모두 사회과학자가 아닌 저널리스트들이다(We are guided by news judgement. We are all journalists, we are not social scientist)”라고 단언한다(Graves, 2016, p.93).

05 팩트체크닷오르그는 검증대상을 선정할 때 공화당과 민주당 자료에 동일시간을 배분해 검토한다.

06 미국의 경우, 정치인들의 의회 발언부터 인터뷰까지 거의 모든 발언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Congressional Quarterly의 CQ Transcript와 렉시스넥시스(LexisNexis) 등이 원자료로 이용된다.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팩트체크 저널리스트들은 스프레드 시트를 이용해 정치인들의 발언들을 집적한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해 둔다.

	팩트체크닷오르그	폴리티팩트	팩트체커
	<p>록/선거웹사이트/후보자의 소셜미디어/독자 질문 등을 모두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실에 근거한 발언들을 검토</li> <li>- 공화당과 민주당 자료에 동일 시간 배분해 검토</li> </ul>	<p>이 높은지, 중요성이 높은지, 타인에 의해 확산되거나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지, 보통 사람이 들었을 때 사실인지 의문을 품을 만한 사안인지를 선정 기준으로 삼음.</p>	<p>발언들에 주목하며 말실수 등은 다루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당파성을 견지하면서 좌든 우든 가리지 않고 부정확한 발언을 한 것에 주목. 그러나 백악관과 의회가 모두 한 당에 의해 지배되고 있을 경우 인위적인 균형을 피하지 않고 권력이 집중된 쪽을 팩트체크.</li> </ul>
조사과정 (resear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언이 사실인지 입증할 1차적인 책임은 발언 주체에게 있음.</li> <li>발언 주체에게 근거자료 요구.</li> <li>- 입증이 불충분할 경우, 독립적인 조사 시작. 독립적인 조사를 할 경우 i) 의회 중언 등의 1차 자료, ii) 의회 예산처 등 비정파적 정부기관, iii)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외부 기관의 데이터 혹은 전문가 등에 의존.</li> <li>- 모든 원자료들은 기사를 작성할 때 링크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개 인터뷰(on the record in terview)만을 사용하며, 모든 팩트체크의 원 자료(source)를 링크와 함께 게시.</li> <li>- 발언자에게 1차적으로 사실 여부를 밝힐 요구</li> <li>- 발언자(기관)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i) 과거 팩트체크 기록을 살피고, ii)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며, iii) 전문가 자문을 구함.</li> <li>- 1차 자료와 원본 문서의 중요성을 강조.</li> <li>- 타 언론의 익명 보도를 사용할 때는 폴리티팩트가 독자적으로 검증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밝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언한 당사자에게 1차적으로 입증 책임</li> <li>- 가능한 모든 경우에 독자들도 팩트체크를 한 기자들이 검증을 위해 활용한 원자료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링크 게시.</li> </ul>
판정 (verdi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 기사마다 팩트체크 기사를 쓰지 않은 4명의 에디터와 책임자가 편집과 최종적 판정 과정에 참여.</li> <li>- 시각적인 판정표 없이 '사실의 왜곡(spin the facts)' 등의 판정을 팩트체크 기사 말미에 기술.</li> <li>- 팩트체크 결과가 Google News에 게시되는 경우 '사실' '거짓'을 밝히는 시각적인 판정표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실부터 새빨간 거짓말 (Pants on fire)까지 6단계로 사실성을 판정해 독자적인 판정표인 '진실 검증기(Truth-O-Meter)'를 통해 제시.</li> <li>- 팩트체크 기사를 쓴 기자와 편집자가 1차적으로 상 의해 판정 결과를 부기하면 이를 기사 작성에 참여하지 않은 3인의 에디터가 판정. 투표 결과, 두 명이 찬성한 판정결과를 게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리에 맞는 사람(reasonable person)'의 기준으로 결론 도출.</li> <li>- 팩트체크에 관한 해설기사가 아니라 사실 거짓 등의 판정이 가능할 경우 독자적인 피노키오 테스트를 통해 검증사실의 사실성 정도를 시각적으로 표현.</li> <li>- 사실성의 정도에 따라, 1개의 피노키오부터 4개의 피노키오까지 부여하며 진실일 때는 제페토(Geppetto), 발언이 바뀌었을 때는 뒤집힘(upside down) 등 6개의 판정기준 사용.</li> </ul>

## 2) 조사과정

### ① 조사의 출발점은 발언자

팩트체크 대상에 대한 조사과정을 다른 취재와 구별 짓는 첫 번째 특징은 발언의 당사자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다. 이는 치밀한 취재의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인용을 얻기 위해 당사자를 인터뷰하는 탐사보도 등의 작법과는 차이가 있다. 발언의 당사자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은 불공평(unfair)할 뿐 아니라 비과학적(unscientific)인 것으로 여겨진다. 발언자가 검증하려는 내용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을 것이며, 왜 검증대상이 되는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 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팩트체크에서는 검증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인용은 공개 기록(on the record)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 ② 독자성(originality)의 준수

팩트체크를 하는 기자들은 특종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보다 자유롭다. “이미 다른 기사이니 다시 다를 필요 없다”는 설명이 팩트체크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동일한 사실을 다른 언론사가 팩트체크했다는 것이 기사의 선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차검증을 통해 신뢰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원자료를 취득해야 한다. 타사의 보도를 인용해서 검증을 생략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폴리티팩트는 어쩔 수 없이 타 언론의 익명 보도를 인용할 수밖에 없을 때는 폴리티팩트가 왜 독자적으로 검증할 수 없었는지를 밝히도록 하고 있다.

### ③ 이견(異見) 수용

팩트체크를 할 때는 가능한 공공 데이터를 이용하고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인 전문가들을 기용할 것이 요청된다. 팩트체크에서는 서로 반대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도록 권장된다. 이는 흔히 “진실 파악을 위한 삼각측량(triangulating the truth)”(Graves, 2016)이라고 표현된다. 보수 진영의 전문가, 진보 진영의 전문가로부터 모두 의견을 듣고 확보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종 판단을 하라는 것이다. 팩트체크닷오르그는 독립적인 조사를 할 경우 i) 의회 증언 등의 1차 자료, ii) 의회 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ce) 등 비정파적 정부기관, iii)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외부 기관

의 데이터 혹은 전문가 등에 의존한다고 밝히고 있다.

#### ④ 익명인용 금지

취재과정에서 철저히 배격되는 것은 익명 인용이다. 폴리티팩트는 “익명 인용자가 진실을 폭로할 수는 없다(You can't have an anonymous source debunking a fact)”는 것을 팩트체크의 핵심 수칙으로 강조한다.

#### ⑤ 자료의 투명 공개

팩트체크닷오르그는 검증을 위한 조사과정에서 동원한 모든 원자료는 기사 속에 링크하도록 한다. 위싱턴포스트의 팩트체커도 기자들이 판정을 위해 이용했던 모든 자료를 가능한 모든 독자들이 접근해 기자들과 동일한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공개한다. 폴리티팩트는 독자들이 폴리티팩트의 판정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공개된 증거를 이용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다.

### 3) 기사작성

#### ① 시의성 탈피

마감시간에 쫓기는 일반적인 취재관행과는 달리 시간을 갖고 충분히 지면을 확보해 조사한 결과를 쓴다. 마감시간에 급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른 저널리즘 행위들과 팩트체크를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가 될 수 있다.

#### ② 역피라미드 방식 뒤집기

뉴스의 서술방식에서 전통적인 역피라미드 방식을 뒤집는다. 팩트체크 저널리즘에서는 가능한 모든 자료를 검토한 뒤 마지막 단계에 판정의 이유를 밝히는 역피라미드 서술 뒤집기(inverted pyramid upside down)의 형식으로 기사가 작성된다.

### 4) 판정(verdict)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기본 목적이 ‘진실의 판정자(arbiters of truth)’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팩트체크 저널리스트들이 팩트체크의 전 과정에서 가장 곤혹스러워 하는 것은 판정이다. 팩트체크를 하는 저널리스트들은 사실부터 거짓까지의 스펙트럼을 가진 판정에 대해 “판정은 과학이자 예술(as much art as science)”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Graves, 2016). 즉 판정에서 ‘사실’과 ‘대체로 사실’을 가르는 기준은 주관적이다.<sup>07</sup>

팩트체크닷오르그, 폴리티팩트는 한 사람의 기자의 판정에 맡기지 않고 다수의 에디터들이 판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판정의 주관성을 최대한 억제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팩트체크닷오르그는 팩트체크 기사를 쓰거나 데스킹하지 않은 에디터와 팩트체커, 디렉터 등 4명이 판정에 참여한다. 폴리티팩트는 팩트체크 기사를 쓴 기자가 1차적으로 판정 결과를 부기하면 이를 기사 작성에 참여하지 않은 세 명의 에디터가 추가적으로 검토한다. 최종적으로 3인이 투표한 결과, 두 명 이상이 찬성한 판정결과를 게시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판정이 전적으로 과학적인 절차나 계량화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이에 관해 위싱턴포스트의 팩트체커를 창설한 마이크 돌스는 “(팩트체크 판정에 대해) 과도하게 심각해지지 말라”는 조언을 한다.

피노키오(위싱턴포스트의 판정 등급)나 ‘새빨간 거짓말(Pants-on-Fire)’ 판정에 본질적으로 과학성은 없다. 이 판정들은 개별 기자 —희망하건대, 독립적이고 부지런하고 식견 있는— 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설득력을 갖기 위해 이 의견은 증거와 조리 있는 논거로 지지되어야 한다. 독자들이 이 판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것은 전적인 자유다. 판정은 식견 있는 토론의 출발점이지, 돌에 새겨진 칙령이 아니다(Dobbs, 2012, p.13).

팩트체크 저널리즘은 일단의 미국 언론인들이 아래로부터 벌여 온 저널리즘 운동이 모체가 되었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 전문기자들이 아닌 시민들도 정보에 대한

---

07 기자 공동체 내부에서도 팩트체크 판정의 자의성에 대해 비판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2011년 “팩트체킹의 종말(End of Factchecking)”이라는 글을 쓴 폴리티코(Politico)의 벤 스미스 기자는 팩트체크가 잘해 봄아 유사과학적인(pseudo scientific) 표제 아래에서 좋은 저널리즘을 하는 것이고, 나쁘게는 유사과학적인 표제 아래 저널리즘을 좀먹는 의견 저널리즘(opinion journalism)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Dobbs, 2012).

접근권이 강화되는 한편, 정치인들도 언론매체만이 아닌 다양한 미디어 채널들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확산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에서 더 이상 과거의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유(類)의 전달만으로는 언론의 책무를 다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저널리스트들로 하여금 기계적 균형성을 넘어서 진실의 판정자(arbiter of truth)를 자임하게 했다.

2017년 이래 한국 언론계에서도 팩트체크 저널리즘이 시작되었지만 국제적인 규범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수행은 여전히 불충분한 상태다. 다음 장에서는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생산된 팩트체크 기사를 통해 한국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현실을 분석해 본다.



## 팩트체크 기사 분석: 연구방법

이번 연구는 최근 국내 언론사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팩트체크’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자료 수집

국내 언론의 ‘팩트체크’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 언론사가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검증한 ‘팩트체크’ 기사를 미국 주요 팩트체크 기관의 검증 원칙을 토대로 비교, 평가하였다. 팩트체크라는 새로운 유형의 기사는 국내에는 19대 대선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미국 팩트체크 기관이 정치 분야의 검증에 주력한다는 점에서 대선에서의 사실 검증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세계적으로 팩트체크가 저널리즘의 새로운 장르로 부각되면서 국내에서도 2017년 국내 최초로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SNU 팩트체크’를 설립하였다. 이곳은 국내 언론사와 제휴하여 언론사가 검증한 기사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SNU 팩트체크’와 제휴한 언론사가 19대 대선에서 검증한 팩트체크 기사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에 포함된 기사는 ‘SNU 팩트체크’가 기사공개 서비스를 시작한

2017년 3월 29일부터 19대 대통령 선거 전날인 2017년 5월 8일까지 제휴 언론사에서 검증한 174건이다.<sup>08</sup> 그러나 언론사들이 이 기간 검증한 사실(fact)은 총 144건이다. 이러한 차이는 174건의 기사 중 52건은 2개 이상의 언론사에서 검증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한편, 'SNU 팩트체크'에는 각 언론사가 검증한 팩트별로 i) 언론사의 '검증 내용'과 ii) 해당 언론사에 게재된 기사의 링크가 소개되어 있으며, 본 연구는 '검증 내용'이 아닌 해당 언론사의 게재 기사를 분석하였다.

## 2. 주요 변인 측정

미국 주요 팩트체크 기관의 검증 원칙을 준수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형식 변인과 내용 변인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형식 변인은 i) 팩트체크의 명시, ii) 발언 여부와 발언자, iii) 발언의 출처, iv) 검증의 개수, v) 검증 기사의 수정, vi) 근거 자료의 요구, vii) 검증의 속성 등으로 구분하였다. 내용 변인은 1) 검증의 질, 2) 투명성, 3) 독자성(Originality) 혹은 1차 자료(original document), 4) 불편부당성, 5) 판정의 근거 등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형식 변인

① 팩트체크의 명시: '팩트체크 기사'를 작성할 때 이를 명시적으로 밝혔는지를 의미한다. 미국에서 '팩트체크'는 새로운 유형의 저널리즘으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국내에서도 팩트체크 기사를 일반 기사와 구분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팩트체크', '팩트체크 이외의 코너명 사용', '없음' 등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② 발언 여부와 발언자: 미국의 팩트체크 기관은 정치인의 발언(구두 혹은 문서)을 주로 팩트체크 한다. 따라서, 국내 언론사의 검증 대상이 특정 정치인의 발언인지를 분석하였다. 발언자란 언론사가 사실을 검증하는 발언의 행위자를 의미한다. 즉, 검증이 정

---

08 SNU 팩트체크의 "19대 대선 검증, 그 성과와 과제"(2017, 정은령)에 따르면 분석대상 기사 수는 177건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사의 링크가 사이트에 없어 제목만으로 기사를 찾을 수 없는 3건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치인, 정당, 정당을 제외한 단체, 혹은 소문 등에서 나온 것인지를 구분하였다. 또한 발언자가 특정 정치인의 발언인 경우에는 발언자가 누구인지를 분석하였다.

③ 출처: 검증 대상의 발언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를 의미한다. 발언의 출처 항목은 ‘신문이나 방송’, ‘개인의 소셜미디어’, ‘보도자료 또는 정당 논평’, ‘캠페인 자료집’, ‘소문이나 의혹 등 기타’, 그리고 ‘언급 없음’ 등으로 구분하였다.

④ 검증의 개수: 하나의 검증 기사에서 몇 개의 사실을 검증하였는지를 의미한다. 하나의 기사에서 한 건의 사실을 검증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기사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별개의 여러 사실을 검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증의 개수는 1개와 1개 초과로 구분하여 코딩하였다.

⑤ 검증 기사의 수정: 검증 기사가 최초 공개 이후 수정되었는지를 의미한다. 수정 여부는 언론사에서 기사를 최초 입력한 시간과 최종 입력한 시간의 차이가 48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수정’인 것으로 분류하였다. 48시간 이내의 수정은 사소한 실수를 바로 잡은 것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sup>09</sup>

⑥ 발언 근거 자료의 요구: 언론사가 정치인이 발언한 사실을 검증하기 전에 정치인에게 해당 발언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요청하였는가를 의미한다. 발언자에게 자료 제시 요구가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거나 관련 자료를 받아서 기사를 작성한 경우에는 ‘있음’으로, 발언자에 대한 자료 제시 요구 혹은 관련 자료를 받아서 기술한 내용이 기사에 없을 때는 ‘없음’으로, 해당 내용의 발언자가 없는 소문 등에 대한 사실 검증이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각각 코딩하였다.

⑦ 검증의 속성: 검증의 속성은 검증이 특정 개인의 경력·경험·행위 등과 같이 후보자 개인의 속성인지, 혹은 취업률, 대학등록금의 추이 등과 같은 비개인적 속성인지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적 속성 여부, 비개인적 속성, 기타 등으로 분석하였다. 기타의 경우에는 의견 등이 포함되었다.

## 2) 내용 변인

① 검증의 질: 검증의 질은 △ 전체 취재원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 기사는 평균 몇

---

09 분석 대상 중 2개의 기사가 48시간 이내에 수정되었으나 기사에 명확하게 수정 내용을 표시하였다.

자인지 △ 검증 대상은 사실인지 △ 검증 과정에서 이견 취재원을 포함하였는지 등으로 분석하였다.

- 전체 취재원 숫자: 검증에 사용된 취재원의 총수를 의미한다. 기사에 인용된 취재원이 많을수록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담고, 폭넓은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재원 숫자는 검증의 질을 파악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취재원이 사람인지 기관인지 혹은 자료인지 등도 분석하였다.
- 기사의 길이: 검증 기사가 몇 자로 이뤄졌는가를 의미한다. 기사가 지나치게 짧을 경우 검증 과정이나 내용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중요하다.
- 검증 대상으로서의 사실: 검증하는 대상이 사실인지를 의미한다. 발언의 진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검증의 대상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어야 하며, 의견은 검증할 수 없다. 이 연구에서도 검증 대상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사실에 기초한 의견인지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사실은 명확히 검증할 수 있는 것으로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동일하게 인식할 수 있는가로 판단하였으며, 의견은 발언자의 주관이 들어가는 발언, 사실적 의견이란 객관적인 사실이나 근거를 바탕으로 한 의견으로 각각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 인과적 내용/미래예측/정치적 수사: 각 검증 기사에 인과적 내용, 미래 예측, 정치적 수사 등이 포함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미국에서 팩트체크를 비판하는 일부 연구자들은 인과적 내용, 미래예측, 정치적 수사 등의 진술은 진위를 판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Uscinski & Butler, 2013).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각 기사에 인과적 내용이 포함되었는지(포함=1, 불포함=0), 미래 예측의 내용이 포함되었는지(포함=1, 불포함=0), 정치적 수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는지(포함=1, 불포함=0) 등을 분석하였다.
- 이견 취재원 포함: 이견 취재원이란 발언자의 주장과 반대되는 입장에 선 취재원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발언자의 주장을 검증하면서 발언자로부터 받은 자료에 만 근거하여 사실을 검증한 경우 이견 취재원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특정 정치인에 대한 의혹에 관한 검증에서 검증을 받는 정치인의 반응이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견 취재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② 검증 과정의 투명성: 얼마나 투명하게 팩트체크 과정을 독자에게 공개하는가를 의미한다. 검증 과정의 투명성은 독자들이 스스로 검증 결과를 판정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검증 과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검증 과정의 투명성을 i) 투명 취재원 숫자, ii) 익명 취재원의 포함 여부, iii) 익명 취재원을 사용한 이유를 설명하였는지 여부, iv) 검증 기사를 수정하였을 때에 수정 내용(correction)의 공개 등으로 분석하였다.

- 투명 취재원의 숫자: 기사에 사용된 실명 취재원이 몇 명인가를 의미한다. 독자들은 검증에 사용된 취재원이 누구인지를 알면 검증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실명 취재원은 기사의 신뢰도와도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사당 사용된 투명 취재원의 숫자를 측정하였다. 또한 취재원이 주로 기관이나 자료인지, 혹은 사람인지 등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익명 취재원의 숫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아 독자들이 어떤 취재원에게서 취재했는지를 알 수 없는 취재원이 몇 명인가를 뜻한다. 익명 취재원은 취재원을 보호하거나 취재 편의를 위해 사용되지만 독자로서는 검증 내용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하다.
- 익명 취재원 사용 이유 설명: 익명 취재원을 사용한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였는지를 의미한다. IFCN은 취재원의 안전이 위협당할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익명 취재원을 사용하되, 취재원에 대한 정보를 기사에 최대한 담도록 권하고 있다.
- 수정 내용의 공개: 기사가 수정되었을 경우 수정된 내용을 명확하게 밝혔는지를 의미한다. 수정 내용의 공개와 비공개로 분석하였다.

③ 독립적 혹은 독자적 취재(Originality) 혹은 1차 자료(original document): 폴리티팩트 등 미국 팩트체크 기관이 중요하게 여기는 검증의 원칙 중 하나는 독자적으로 혹은 독립적으로 취재하라는 ‘독자적 취재(fact checks with our own process)’이다. 같은 맥락에서 원 자료 혹은 1차 자료(original document)를 확인해 검증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Amazeen, 2013). 예를 들면 팩트체크닷오르그에서는 ‘정보의 주요 원천(Primary sources of information)’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치인의 발언이 특정 자료를 토대로 이뤄졌다면, 해당 자료를 직접 확인하여 사실인지를 검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인이 특정 보도에 의존하여 발언하였다면 해당 언론의 보도뿐 아니라 혹시 해당

언론이 보도할 때 근거한 자료가 있다면 이 역시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독자성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1차 자료 검증’과 ‘직접 취재원 검증’으로, 독자성 위배를 ‘다른 언론의 보도 의존’으로 각각 분석하였다.

- 1차 자료 검증: 해당 발언의 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1차 자료를 확인하였는지를 측정하였다.
- 취재원 검증: 해당 발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취재원과 접촉하였는지 측정하였다.
- 다른 언론의 보도 의존: 사실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다른 언론의 보도에 의존하였는지를 측정하였다.

④ 불편부당성: 미국 팩트체크 기관의 주요 검증 원칙 중 하나는 불편부당성을 유지하기 혹은 정파성에서 벗어나기이다(Graves, 2016, 2017). 팩트체커는 검증 대상을 정할 때 “냉정하고 비정파적임(dispassionate and non-partisan)”을 강조하며, 팩트체크닷오르그는 “공화당과 민주당에 동일한 시간을 부여해 발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연구는 미국의 선행연구에서 미국의 팩트체크 기관들이 편향되었는지를 검증할 때에 사용한 방식을 따랐다(Amazeen, 2013, 2015a,b, 2016; Marietta, Barker, & Bowser, 2015; Ostermeier, 2011). 구체적으로는 i)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검증 대상의 편향 여부, ii) 판정 결과에서의 언론사별 일치도 등을 분석하였다.

- 언론사에 따른 검증 선택에서의 편향(Selection Bias): 팩트체크 기관에서 특정 정파의 정치인 혹은 후보자의 발언을 더 집중적으로 검증하였는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보수 언론으로 인식되는 조선일보에서 보수 정당의 홍준표 후보자를 진보 언론사에 비해 (혹은 다른 후보자에 비해) 비교적 덜 검증하였는지를 의미한다(혹은 진보 후보자인 문재인 후보자를 더 빈번하게 검증). 이번 연구에서는 검증선택에서의 편향을 알아보기 위해 i) 발언자 선택에서 편향이 있는지와 ii) 진술문 내용의 주체에서 편향이 있었는지 등과 같이 2개 차원에서 검증하였다. 그 이유는 발언자와 진술문의 주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홍준표 후보자가 “안철수 후보자는 사드 관련해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할 경우 발언자는 홍준표 후보자이며, 진술문 내용의 주체는 안철수 후보자이다.
- 교차검증과 교차검증 결과의 일치도: 교차검증이란 하나의 사실에 대해 두 개 이

상의 언론사에서 검증이 이뤄진 것을 의미한다. 교차검증 결과의 일치도란 여러 언론사가 동일한 사실을 검증하였을 때 얼마나 언론사별로 검증 후 판정 결과가 일치하는가를 의미한다.

⑤ 판정의 근거: 판정이란 언론사가 검증 결과를 ‘사실’ ‘대체로 사실’ ‘절반의 사실’ ‘대체로 사실 아님’ ‘사실 아님’ 등으로 제시하는 것을 뜻한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언론사들이 어떠한 근거를 토대로 판정하는지를 조사하였다.

○ 판정의 근거가 된 이유: 국내 언론사들이 사실을 검증한 뒤 판정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근거를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실수, 사실의 오류, 사실의 과장, 사실의 누락, 해석상의 차이, 독자의 오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실의 오류 혹은 과장 등을 명백히 기사에 언급한 경우에 이러한 근거에 의해 판정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 3) 코딩 및 신뢰도 측정

기사의 코딩 작업은 연구자와 매스커뮤니케이션의 박사과정 수료자가 담당하였으며, 두 차례에 걸쳐 코딩북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한 사전회의를 진행하였다. 이후 전체 기사의 약 15.0%(20건)를 대상으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뢰도가 70.0% 이하인 변인에 대해서는 회의 후 재코딩하였다. 최종적으로 크리펜도르프 알파(Krippendorff's Alpha)로 각 변인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신뢰도는 최저 0.768에서 최고 1로 나타났다.



## 팩트체크 기사 분석: 연구결과

이번 조사는 미국의 정치 팩트체커의 검증 절차 및 검증 프로토콜을 분석해 이를 토대로 국내 언론사의 팩트체크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자 진행되었다. 국내 팩트체크의 국내 현황은 i) 기술적 분석, ii) 형식적 특징, iii) 내용적 특징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기술적 특징에는 언론사별 분석, 검증의 대상, 그리고 판정의 결과 분포 등을 포함하였다. 형식적 특징으로는 팩트체크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혔는지, 검증이 특정 정치인의 발언인지 혹은 의혹인지, 출처를 공개했는지, 하나의 기사에서 검증하는 사실(fact)의 개수는 몇 개인지, 발언자에게 발언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명시적으로 요구했는지, 검증의 속성이 무엇인지(후보자의 개인적 속성 여부) 등이다. 내용적 특징으로는 검증의 질(기사의 질, 취재원 숫자, 검증대상이 사실인지 여부, 이견 취재원 포함 여부 등), 검증 과정의 투명성(투명 취재원 숫자, 익명 취재원 숫자, 익명 취재원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한 소명, 수정한 내용의 공개), 독자성(Originality), 불편부당성(교차검증의 일치도 등)으로 분석하였다.

### 1. 기술적 특징

이 조사는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내 언론사에서 대통령 후보자들의 발언이나

공약, 그리고 의혹 등에 대한 사실을 검증한 뒤 SNU 팩트체크에 검증 결과를 공개한 기사 174건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들 검증기사의 상세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 언론사별 팩트체크

언론사별로는 SBS가 가장 활발하게 사실 검증에 참여하여 41건의 기사를 제공하였으며, 조선일보(31건), 중앙일보(20건), 한국일보(18건), KBS(18건) 등의 순서였다. 이들 5개 언론사의 팩트체크가 전체의 73.5%를 차지했다.

**표 4-1** 주요 언론사별 팩트체크 건수 및 결과 비교

언론사	매일경제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SBS	JTBC	KBS
팩트체크	10	9	31	20	18	41	14	18
최다검증 (발언자 기준)	홍준표(3) 유승민(2)	안철수(2)	홍준표(8)	문재인(8)	없음(5)	없음 (16)	홍준표(7)	홍준표(6) 안철수(6)
최다검증 (진술문 내용의 주체 기준)	홍준표(3) 안철수(3)	문재인(5)	안철수(10)	홍준표(5) 문재인(5)	홍준표(5)	안철수(13)	홍준표(6)	안철수(7)
판정결과	사실	2	1	7	1	3	2	0
	대체로 사실	2	2	2	2	5	0	3
	절반의 사실	2	3	9	10	3	4	1
	대체로 사실 아님	3	1	2	7	4	10	6
	사실 아님	0	2	9	0	5	19	3
	판단 유보	1	0	2	0	1	2	0

※ 괄호 안 숫자는 검증기사 건수. '없음'이라는 발언자가 없는 의혹 등에 대한 검증.

홍준표 후보자가 발언에 대해 가장 많이 검증을 받은 후보였다. 즉, 매일경제, 조선일보, JTBC, KBS 등에서는 여러 후보자 중 홍준표 후보자의 발언을 가장 많이 검증하

였다. 한편 후보자 발언(진술문)의 주체를 기준으로 한 발언자의 경우에는 홍준표 후보자와 안철수 후보자가 최다 검증 대상이었다. 판정 결과, 즉 “사실, 대체로 사실, 절반의 사실, 대체로 사실아님, 사실아님” 등과 같은 다섯 단계의 판정 분포에서도 언론사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조선일보의 경우 판정의 결과가 사실 혹은 대체로 사실인 기사가 9건으로 전체의 약 29.0%이었으나, JTBC의 경우에는 한 건도 없었다.

## 2) 무엇을 검증하였나

국내 언론사들은 주로 특정 발언자의 타인 혹은 이슈에 대한 언급이나 비판이 진실 인지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발언자가 타인을 공격하거나 언급한 내용에 대한 검증이 87건(50.0%)로 가장 많았으며, 발언자 자신에 대한 해명이 43건(24.7%), 그리고 발언자의 공약이 14건(8.0%) 등이었다. 한편 발언자가 없는 소문이나 의혹 등에 검증은 30건(17.2%)이었다.

## 3) 판정의 결과

언론사의 판정 결과 “사실 아님”이 48건(27.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대체로 사실 아님” 41건(23.5%), “절반의 사실” 37건(21.2%) 등의 순서였다.

표 4-2 팩트체크 판정의 결과

	사실 아님	대체로 사실 아님	절반의 사실	대체로 사실	사실	판단유보	합계
건수	48	41	37	22	16	10	174

발언자 기준으로는 홍준표 후보자는 총 51건의 검증 기사 중 21건(41.1%)의 기사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다. 또한 대체로 사실 아님의 10건까지 포함하면 60.7%의 발언이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다. 문재인 후보자도 총 26건의 발언 중 12건(46.1%)이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안철수 후보자도 총 21건의 발언 중 14건(66.7%)이 사실이 아니었으며 비율

로는 가장 높았다.

표 4-3 발언자를 기준으로 한 검증결과 분석

	사실 아님	대체로 사실 아님	절반의 사실	대체로 사실	사실	판단유보	합계
홍준표	21	10	10	4	4	2	51
문재인	5	7	6	6	2	0	26
안철수	6	8	4	1	1	1	21
유승민	1	3	5	2	4	1	16

한편 발언의 진술문 주체를 기준으로 한 분석 결과, 안철수 후보자가 47건(27.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문재인 후보자 44건(25.2%), 홍준표 후보자 39건(22.4%), 유승민 후보자 7건(4.0%) 등의 순서였다. 또한 안철수 후보자의 경우 27건(57.4%)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재인 후보자도 19건(43.1%), 홍준표 후보자는 19건(48.7%) 등이었다.

표 4-4 발언의 진술문 주체를 기준으로 한 결과 분석

	사실 아님	대체로 사실 아님	절반의 사실	대체로 사실	사실	판단유보	합계
안철수	14	13	9	2	6	3	47
문재인	9	10	10	8	4	3	44
홍준표	9	10	6	7	5	2	39
유승민	2	2	3	0	0	0	7

요약하면 발언자를 기준으로 할 때와 발언자의 진술문을 기준으로 할 때, 판정 결과에서 '대체로 사실 아님' 혹은 '사실 아님'의 건수가 가장 많은 후보자는 각각 홍준표 후보자와 안철수 후보자였으며, 비율 기준으로 할 때는 모두 안철수 후보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주요 결과

### 1) 형식적 특징

#### ① 팩트체크의 명시

이번 조사에서는 언론사에서 ‘팩트체크’임을 알 수 있는 별도의 코너에서 다뤘는가를 분석하였다. 미국 전업 팩트체크 기관의 검증기사는 진실여부를 판정하여 독자에게 알린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기사와는 다른 유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JTBC, 중앙일보, 서울신문 등은 ‘팩트체크’라는 코너명을 사용하였으며, SBS ‘사실은’, 한국일보 ‘팩트 파인더’, 매일경제 ‘레이더P’ 등 새로운 코너의 이름을 정하였다. 또한 팩트체크라는 별도의 코너를 정하지 않은 언론사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팩트체크’ 이외의 코너명을 사용하는 기사가 101개(58.0%)로 가장 많았으며, 팩트체크를 사용한 기사는 65개(37.3%)였다. 그러나 팩트체크임을 명시하지 않은 기사도 8개(4.6%)였다.

표 4-5 팩트체크 명시 언론사

팩트체크	다른 이름	없음	합계
65	101	8	174

#### ② 발언 여부(발언/의혹/소문 등)

언론사의 검증 대상이 정치인의 발언인지의 여부와 정치인의 발언일 경우 누구의 발언인지 등을 분석하였다. 미국에서의 정치 분야의 팩트체크는 정치인의 발언을 주로 검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의 팩트체크는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치인의 발언을 검증한 기사가 1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당인의 논평이 7건이었다. 한편, 정당의 발언이 아닌 의혹이나 소문에 대한 팩트체크도 33건이었다.

표 4-6 누구의 발언을 검증하였는가?

정치인	정당논평	발언자 없는 의혹 소문	합계
134	7	33	174

발언자는 두 개 항목, 즉 발언자와 ‘발언 진술문 내용의 주체’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만일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의 경력에 대해 발언을 하였다면 발언자는 홍준표 후보이나, 검증의 대상은 안철수 후보의 경력이기 때문에 이를 각각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홍준표 후보자가 “안철수 후보자가 사드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고 발언한 경우, 발언자는 홍준표 후보자이며, 진술문 내용의 주체는 안철수 후보자이다. 그 결과 발언자 기준으로는 홍준표 후보가 51건(29.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문재인(26건), 안철수(21건), 유승민(16건), 심상정(6건) 등의 순서였다. 그러나 정치인 발언(진술문)의 주체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소 달랐다. 안철수 후보가 47건(27.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문재인(44건), 홍준표(39건), 유승민(7건) 등의 순서였다. 즉, 안철수 문재인 홍준표 등 주요 세 명의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총 130건으로 전체의 74.7%를 차지했다.

### ③ 출처

검증 대상이 되는 발언 혹은 의혹이 어디에서 언급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검증 대상이 된 발언은 주로 신문이나 방송에서 다른 기사 및 TV토론회 등이 8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일부 팩트체크 기사들은 어디에서 언급되었는지를 밝히지 않았으며 이러한 기사는 50건(소문이나 의혹 포함)에 이르렀다.

표 4-7 검증 대상이 된 사실(Fact)의 출처

언급 없음 (소문/의혹)	기사 및 방송	소셜미디어	보도자료	캠페인 자료집	기타	합계
50	86	5	16	9	8	174

### ④ 하나의 기사에서 검증된 사실의 개수

하나의 기사에서 하나의 사실만을 검증하였는지를 조사하였다. 국내 언론사들의 팩트체크는 검증이 하나의 주제를 다루는 기사가 151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여러 건을 하나의 기사에서 검증한 사례도 23건이었다. 하나의 기사에서 여러 개의 사실을 검증할 경우, 각각을 다루는 기사 내용이 짧아 관련 사실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울 수

도 있다. 또한 하나의 기사가 여러 개의 팩트를 동시에 검증할 경우, 검증 결과가 사실 별로 일치하지 않을 때(즉, 일부 팩트는 진실, 일부는 거짓) 결과를 일률적으로 제시하기 어렵다.

#### ⑤ 검증 기사의 수정

기사가 처음 공개될 때와 다르게 수정된 기사는 전체 174건의 기사 중 47건이었으며, 127건은 수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수정 여부를 “기사가 최초 입력된 시간과 수정 입력된 시간이 48시간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로 판단하였다.

#### ⑥ 발언 근거의 자료 요구

국내 언론사에서 명시적으로 발언 정치인에게 근거 자료를 명확하게 요청한 기사는 21건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인 122건은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미국 정치 전문 팩트체커의 검증에서는 정치인의 발언을 검증을 시작할 때 해당 정치인에게 발언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요청한 뒤 타당성, 신뢰성, 정확성 등을 검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언론사에서 발언자에게 자료를 요청한 사실을 기사에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데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는 만큼,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해당 없음’에 포함된 기사는 발언자가 없는 의혹 소문 등을 검증한 경우를 의미한다.

표 4-8 발언의 근거 자료 요청

	있음	없음 혹은 해당없음	합계
자료요구	21	153	174

#### ⑦ 검증의 속성: 후보자의 경력 등 개인적 속성 vs 공약 등의 비개인적 속성

국내 언론이 검증한 내용은 개인의 경력 특성 등과 같은 속성인지 아니면 공약과 같이 후보자와 관련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정보인지를 분석하였다. 국내 언론사의 팩트 체크는 후보자들이 다른 후보자의 경력이나 특성에 대해 발언하거나 혹은 후보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해명이 진실인지를 검증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적

속성이 100건으로 57.4%를 차지하였으며 공약 등을 검증한 기사는 70건(40.2%)에 머물렀다. 특히 이 기간, 안철수 후보자의 경우 부인의 서울대 채용 관련 검증, 문재인 후보자의 경우에는 아들인 문준용 씨의 특혜 채용, 홍준표 후보자는 소송과 관련된 후보자 자격 등의 검증이 집중되었다.

후보자별로는, 홍준표 후보자의 경우 후보자의 속성이 20건(51.3%), 공약 등의 정보가 18건(46.2%), 기타가 1건(2.5%)으로 후보자의 속성과 공약 등의 정보가 비교적 비슷한 비율로 검증되었다. 문재인 후보자의 경우 후보자의 속성이 33건(75.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안철수 후보자의 경우에도 역시 후보자의 속성에 대한 검증이 38건으로 전체의 80.9%를 차지하였으며, 공약 등의 정보가 8건(17.0%)이었다. 한편, 기타의 경우, 검증 대상의 속성이나 특정 사실 관계에 대한 정보가 아닌, 사회적 이슈, 의혹 등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 특정 후보자와 관련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의혹, 회고록 진위에 대한 논란 등이다.

표 4-9 검증 대상의 속성

		후보자 속성	공약 등 정보	기타	합계
구분		100	70	4	174
후보자	홍준표	20	18	1	39
	문재인	33	11	0	44
	안철수	38	8	1	47

## 2) 내용 변인

국내 팩트체킹의 내용적 특징은 크게 i) 검증의 질(전체 취재원 숫자, 기사의 글자 수, 검증의 대상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검증에서 이견 취재원을 포함했는지 등), ii) 검증의 투명성, iii) 검증의 독자성(Originality), iv) 검증의 불편부당성, v) 판정의 근거 이유 등 다섯 항목으로 분석하였다.

## ① 검증의 질

검증의 질은 기사의 길이(글자 수), 전체 취재원 숫자, 무엇을 검증하였는지(사실 혹은 사실적 의견) 그리고 검증 과정에서 이견 취재원을 포함하였는지 등으로 평가하였다.

### ○ 기사의 길이

본 연구에서는 기사 길이가 지나치게 짧을 경우 다양한 정보를 담을 수 없는 만큼, 기사의 길이도 검증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언론사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실을 검증하는 기사의 길이는 평균 2002자인 것으로 나타났다(최소 540자, 최대 4948자).

언론사를 방송사와 신문사로 나누어 살펴보면, 방송사에서는 JTBC 기사가 평균 2301자로 가장 길었으며, 다음은 SBS 2208자, KBS 2049자, YTN 1359자, MBC 1148자, MBN 988자 등의 순서였다. 신문사에서는 매일경제 기사가 2888자로 가장 길었으며, 다음은 중앙일보 2211자, 서울신문 2182자, 동아일보 1896자, 조선일보 1665자, 한국일보 1469자 등이었다.

표 4-10 팩트체크 기사의 길이

언론사		평균	표준편차
방송사	SBS (41)	2208.46	877.54
	KBS(18)	2049.78	515.03
	JTBC(14)	2301.36	239.52
	YTN(5)	1359.60	91.00
	MBC(3)	1148.67	34.93
	MBN(2)	988.50	95.46
신문사	조선일보(31)	1665.26	524.61
	중앙일보(20)	2211.85	894.97
	한국일보(18)	1469.33	425.55
	매일경제(10)	2888.70	1117.29
	서울신문(9)	2182.89	1121.53
	동아일보(3)	1896.33	246.53

※ 괄호 안 숫자는 팩트체크 기사 건수

## ○ 전체 취재원의 숫자

취재원의 숫자(사람과 기관 자료를 포함)는 기자가 얼마나 다양한 자료에 접근해 취재했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사의 품질을 평가할 때도 중요하다. 조사 결과, 국내 언론사들이 사실을 검증할 때 사용한 취재원 숫자는 기사당 평균 3.57건이었다. 기사의 품질을 평가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었다.

표 4-11 팩트체크 기사에 사용된 전체 취재원 숫자

언론사		평균	표준편차
방송사	SBS (41)	2.37	1.61
	KBS(18)	3.44	1.20
	JTBC(14)	3.29	1.94
	YTN(5)	2.60	1.14
	MBC(3)	2.67	1.15
	MBN(2)	3.50	2.12
신문사	조선일보(31)	4.01	2.02
	중앙일보(20)	4.95	2.68
	한국일보(18)	3.61	2.57
	매일경제(10)	6.20	3.05
	서울신문(9)	2.78	0.83
	동아일보(3)	3.67	2.08

※ 괄호 안 숫자는 팩트체크 기사 건수

보다 구체적으로, 언론사별로 살펴보면 방송사의 경우 기사별로 등장하는 취재원 숫자는 평균 2.98건이었다. MBN이 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KBS 3.44건, JTBC 3.29건, MBC 2.67건, YTN 2.60건 등이었으며, SBS가 2.37건으로 가장 적었다. 한편, 신문사의 경우 기사당 평균 4.21건의 취재원이 등장하였다. 매일경제가 6.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중앙일보 4.95건, 조선일보 4.01건, 동아일보 3.67건, 한국일보 3.61건, 서울신문 2.78건 등의 순서였다. 일반적으로 신문사의 사실 검증 기사에서 방송사의 기사보다 더 많은 취재원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 ○ 검증 대상: 사실 vs 사실적 의견

미국 정치 팩트체크 기관에서는 검증의 대상에 대해 명백하게 “검증 가능한 사실”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실’은 진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지만, ‘의견’은 진실 여부를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실과 의견이 명백하게 구분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으며 더 나아가 ‘사실에 바탕을 둔 의견’으로 보이는 검증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에 바탕을 둔 의견’의 경우에는 진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Marietta, Barker, & Bowser, 2015; Uscinski & Butler, 2013).

**표 4-12** 사실 · 사실적 의견에 대한 검증

		사실	사실적 의견	기타	합계
검증대상		127	43	4	174
방송사	SBS	30	10	1	41
	KBS	16	2	0	18
	JTBC	10	4	0	14
	YTN	4	0	1	5
	MBC	1	1	1	3
	MBN	1	1	0	2
신문사	조선일보	24	7	0	31
	중앙일보	13	7	0	20
	한국일보	10	8	0	18
	매일경제	8	1	1	10
	서울신문	8	1	0	9
	동아일보	2	1	0	3

본 연구에서도 국내 언론사에서 검증 가능한 사실을 검증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 검증 대상이 명백히 사실인 기사가 127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나 사실적 의견으로 구분된 기사도 43건에 이르렀다. 아울러, 검증 대상이 사실도 의견도 아닌 기사도 4건이 있었다. 예를 들어, 매일경제는 “문재인 안철수 양자대결 결과, 여론조사마다 왜 널뛰나”라는 제목으로 사실검증을 하였으나, 이는 “왜”라는 원인을 다룬 기사로 사실이나 사실적 의견으로 구분하기 어려웠다.

한편 사실적 의견에 대한 검증 기사로 구분된 대표적 사례는 “홍준표 후보자가 기자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최고의 선거운동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대선관련 가짜뉴스가 담긴 글을 단톡방을 통해 유포했는데 자신은 내용을 모르고 보냈다고 주장” “유승민, 홍준표의 심야사퇴는 꼼수” “홍준표 후보자, ‘동성애가 국방 전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 등이다. 또한 “안철수 후보자가 ‘문재인 후보자 의정활동 불성실했다’고 주장” “유승민 후보자의 ‘국방백서에 북한군이 우리 주적이라고 나오는데’라고 주장” “홍준표 후보자, ‘소득분배 지니계수가 노무현 정부 때 가장 나빴다’고 주장” 등도 사실적 의견으로 분류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일보는 안철수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도 국모닝했다”는 발언의 진위를 검증하였다. 이는 국민의당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비판해 “문모닝당으로 불린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문모닝은 국민의당이 매일 오전 회의 때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 비판한다고 해서 붙여진 표현이며, 중앙일보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국민의당이 오전에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문 전 대표를 얼마나 비판했는지를 제시하고, 반대로 민주당의 비대위 회의록, 논평, 브리핑을 토대로 민주당이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자를 얼마나 비판했는지를 검증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국모닝했다”라는 발언을 검증한 것이다. 즉, 안철수 후보자가 민주당의 비판 행위를 토대로 한 의견을 제시했고, 중앙일보는 이러한 행위가 타당한지를 검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KBS는 홍준표 후보자의 “대부분의 경남 사람들은 보궐선거를 원치 않습니다”라는 발언을 검증한 뒤, 거짓이라는 판정결과를 제시하였다. 경남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다는 근거를 토대로 판단하였다. 경남 사람들이 보궐선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홍준표 후보자의 판단 혹은 평가 혹은 의견이며 이는 어떠한 자료를 토대로 한 발언이냐에 따라 ‘의견’ 혹은 ‘사실적 의견’이 될 수 있다고 연구진은 판단하였다.

아울러 SBS는 지사직 사퇴를 하지 않은 홍준표 후보자에 대해 ‘꼼수 사퇴’인지에 대한 논란을 검증하였다. ‘꼼수’의 사전적 의미는 “제제한 수단이나 방법”이며 SBS는 홍후보자가 지사직에서 사퇴한 방식(사실)을 토대로 ‘꼼수’인지를 검증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제제하다는 것은 개인적 판단이어서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홍준표 후보자의 “동성애가 국방전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한 검증의 경우 KBS는 이

러한 발언이 나올 수 있는 근거를 나름대로 유추하였다. 첫째는 동성애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군복무에 적합한 능력이 떨어지고, 둘째 이성애자들이 동성애자들에 불편함을 느껴 군의 단합을 저해하며, 셋째 동성애가 군기를 해친다는 것이다. 첫 번째 주장과 관련해서 “현재는 군의 전투력 보존을 위해 동성 군인에 대해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해외연구와 사례 등에서 동성애와 전투력에는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절반의 사실’로 판정하였다. JTBC는 군형법 등과는 별개로 전투력과 동성애의 직접적 관계를 검증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판단불가’로 검증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경우에는 홍준표 후보자의 발언은 사실적 근거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동성애에 대해 가진 의견으로도 보여 검증 가능성은 둘러싼 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팩트체크에 부정적인 학자들은 팩트체크 기관이 인과관계 혹은 미래예측 내용을 검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공격해 왔다. 구체적으로 사회현상에 대한 인과관계의 발언은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책적 효과—특정 정책으로 실업자가 줄었다—를 해당 정책의 효과만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을 토대로 국내에서 이뤄진 팩트체크 중 인과관계, 미래예측, 그리고 정치적 수사가 포함된 기사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과관계 포함 32건, 미래예측 18건, 정치적 수사 44건 등으로 나타났다.

### ○ 이견 취재원 포함 여부

정치인의 발언을 검증할 때 공격을 한 쪽과 공격을 받은 쪽을 지지하는 취재원이 각각 포함되었는지도 중요하다.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근거에만 의존하여 발언의 진실여부를 판단할 경우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공격자가 없이 특정 후보자가 자신이나 자신의 공약에 대한 검증을 할 때에도 후보자의 지지자나 혹은 후보자의 캠프 자료에만 의존해서는 정확한 팩트체크가 되기 어렵다. 이번 연구에서 이견 취재원의 포함 여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기사에서는 이견 취재원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이견 취재원을 포함하지 않은 팩트체크 기사도 8건이었다.

표 4-13 이견 취재원을 포함하지 않은 팩트체크 기사

언론사	기사 제목
서울신문	“카더라” 文 vs 安 무차별 폭로전 ‘찢어진 장미대선’ 되나
조선일보	안철수 후보가 국정원 국내 기능 폐지, 전교조 ‘합법화’ 공약?
한국일보	문재인, 기무사령관에 ‘국보법 폐지’ 회유했나
SBS	홍준표 “DJ,盧 정권, 북한에 70억 달러 줬다” 확인해 보니
한국일보	노무현 정부 때 지니계수 최악이었다?
YTN	지니계수, 노무현 대통령 때 최악이었다?
중앙일보	문재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만들 수 있다”
SBS	문재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북한 5차 핵실험 이후에도 사드반대 입장 유지 했다”

구체적으로 이견 취재원을 포함하지 않은 기사로 문재인 후보자의 공약을 검증한 문재인 후보자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전적으로 문재인 후보자의 캠프에만 의존해서 작성하였다. 이 경우에는 실현 가능성에 대해 적절하게 검증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한국일보는 문재인 후보자가 기무사령관에게 국보법 폐지를 회유했다는 홍준표 후보자의 발언을 검증하였다. 이에 대해 폐지를 회유했다는 측의 입장만을 반영했을 뿐 문재인 후보자의 입장은 토론회에서의 발언만을 인용해 제대로 입장을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와 유사하게 SBS뉴스는 홍준표 후보자가 “DJ, 노무현 정권이 북한에 70억 달러 줬다”는 발언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있는 통일부의 자료를 통해 검증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홍준표 후보측이 어떠한 의도에서 이러한 계산을 했는지에 대해 충분히 다뤄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이견 취재원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서울신문은 “카더라” 문과 무차별 폭로전에 나선 안’이라는 검증기사에서는 양측이 이러저러한 주장을 했다는 사실 이외에는 검증이라고 볼 수 있는 취재내용을 아예 포함하지 않았다.

## ② 검증 과정의 투명성

미국의 3대 팩트체크 기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실 검증의 요소 중 하나는 투명성이다. 즉, 정치인의 발언을 검증하면서, 자신들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 누구에게, 어떠한 말을 들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들은 취재과정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함으로

써, 검증기사를 읽는 독자가 스스로 정보를 검증하고, 스스로 진실인지를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여긴다. 실제 IFCN은 이러한 관행에 대해 “독자가 우리의 일을 반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자세하게 취재원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검증 과정의 투명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누구를 통해 검증했는지를 정확하게 밝히는 ‘투명 취재원’의 사용이다. 누구를 통해 사실을 검증했는지를 밝히는 것은 독자들이 해당 검증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이 때문에 미국의 팩트체크 기관에서는 검증 기사에서 익명의 취재원은 사실상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IFCN도 “취재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밝히지 않으나, 이 경우에도 가능한 상세히 취재원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검증원칙을 소개하였다. 한편, 3대 팩트체크 기관과 IFCN은 수정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독자에게 명확하게 알리는 ‘수정 내용의 공개’가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이다. 즉, 모든 판단은 새로운 증거가 나올 때에 달라지거나 수정될 수 있으며, 이를 공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팩트체크 기관의 관행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도 i) 투명 취재원이 몇 명인지, ii) 익명 취재원은 몇 명인지, iii) 익명 취재원을 사용한 경우 그 이유를 밝혔는지, 그리고 iv) 수정된 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정확하게 밝혔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 ○ 투명 취재원

국내 팩트체크 기사에 사용된 투명 취재원의 숫자는 평균 2.64건(사람과 기관 자료를 포함)에 머물렀다. 국내 기사의 취재원 사용 현황에 대한 선행연구과 비교할 때 유사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즉, 2016년 1년 동안 국내의 주요 일간지 10곳의 1면 기사에 등장한 투명 취재원 숫자를 분석한 연구 결과, 2.70건으로 조사되었다(김경모 외, 2018).

기사에 사용된 투명 취재원 숫자를 언론사별로 살펴보면, 매일경제가 4.70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검증기사의 전체 건수가 10건에 불과했다. 비교적 검증기사가 많았던 언론사 중 기사당 투명 취재원 숫자가 많은 언론사는 중앙일보 3.75건, 조선일보 3.00건 등이었다.

### ○ 익명 취재원의 사용

미국의 팩트체크 기관들은 익명 취재원의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지만, 국내 언론사의 경우 기사당 사용된 익명 취재원의 숫자가 평균 0.89건으로 나타났다. 즉 검증

기사 1개당 거의 1건꼴로 익명 취재원이 사용되었다는 뜻이다. 언론사별로 팩트체크 기사에 사용된 익명취재원 숫자를 살펴보면 먼저 방송사의 경우에는 MBC가 1.33건으로 가장 많았고, JTBC 1.14건, MBN 1.00건, SBS 0.71건, KBS 0.61건이었다. YTN은 익명취재원을 한 건도 사용하지 않았다. 신문사의 경우에는 매일경제가 1.50건으로 가장 많은 익명 취재원을 사용하였으며, 다음은 중앙일보 1.20건, 조선일보 1.03건, 한국일보 0.83건, 동아일보 0.67건, 서울신문 0.56건 등의 순이었다. 언론사들이 팩트체크 기사에서도 익명 취재원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 기사의 작성에서도 흔히 익명 취재원을 사용하는 관행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선행연구에서는 서구의 선진 언론에 비해 한국 언론의 익명 취재원 사용이 흔하다고 밝혀 왔다.

익명 취재원의 광범위한 사용은 익명 취재원을 사용한 기사의 비율(51.7%, 90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MBN은 익명 취재원이 없는 기사가 한 건도 없었다. 반면, YTN은 다섯 건의 팩트체크 기사 모두에서 익명 취재원을 사용하지 않았다.

**표 4-14** 언론사별 익명 취재원이 사용된 기사의 비율

언론사	익명 취재원 있음	익명 취재원 없음
방송사	SBS (41)	19건(46.3%)
	KBS(18)	7건(38.9%)
	JTBC(14)	7건(50.0%)
	YTN(5)	0건(0.0%)
	MBC(3)	2건(66.7%)
	MBN(2)	2건(100.0%)
신문사	조선일보(31)	18건(58.1%)
	중앙일보(20)	11건(55.0%)
	한국일보(18)	11건(61.1%)
	매일경제(10)	8건(80.0%)
	서울신문(9)	4건(44.4%)
	동아일보(3)	1건(33.3%)

※ 괄호 안 숫자는 팩트체크 기사건수

### ○ 익명 취재원 사용한 이유 설명 여부

더 나아가 익명 취재원을 사용한 이유를 밝힌 기사는 익명 취재원을 사용한 90건의 기사 중 2건에 불과하였다. 해당 기사가 밝힌 익명 취재원을 사용한 이유는 각각 다음과 같다: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길 거부한 한 환경공학과 교수”(매일경제), “회사의 방침에 따라 공식 인터뷰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힌 한 여론조사 전문가”(중앙일보).

### ○ 수정 내용(*correction*)의 투명한 공개

사실을 검증한 뒤 기사를 수정한 경우, 수정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은 투명성과 신뢰도 측면에서 중요하다. 핵심적 내용이 수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수정되기 이전의 기사를 읽은 독자는 잘못된 팩트를 사실로 인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미국 정치 팩트체커도 기사 내용이 수정되었을 경우, 이를 뉴스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라는 원칙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결과 국내 언론의 팩트체크 기사에서는 어떤 내용이 수정되었는지를 알기 어려웠다.

표 4-15 수정 내용의 구체적 공개

	수정 내용 있음	수정되었으나 표시 없음	수정되지 않음	합계
수정내용 표시	4	45	125	174

구체적으로, 이번 조사에서 수정된 것으로 파악된 기사는 모두 47건이었다. 이 가운데 변경 내용이 표시되지 않은 기사가 45건이고, 변경 내용이 표시된 기사가 2건이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수정된 것으로 판단하지 않은, 즉, 48시간 이내에 수정된 기사 중 2건이 수정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혔었다. 따라서 어떤 내용이 수정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힌 기사는 모두 4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2건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수정 권고를 받아 수정한 내용을 밝힌 기사였다.

### ③ 독자적 취재(Originality) 또는 1차 자료(Original document)

미국의 팩트체크 기관들이 정치인 발언의 진위를 판결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은 독자적 취재(originality)와 증거(evidence)이다. 즉, 정치인의 발언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는 증거가 말해 준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증거란 “1차 자료(original document)” 혹은 취재원의 직접 접촉(간접적 자료 혹은 취재원의 전언에 의존하지 않음)을 의미 한다. 또한 다른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의존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취재하도록 한다. 정치 분야의 팩트체커들은 다른 언론의 보도에 의존해 보도하거나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취재원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하는 것이 허위 정보의 광범위한 유통에 기여했다며 비판하였다(Dobbs, 2012).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연구에서도 국내 언론이 검증기사를 작성할 때 1차 자료 혹은 직접적으로 관련된 취재원을 통해 검증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다른 언론의 보도에 의존한 기사는 어느 정도인지도 측정하였다.

#### ○ 1차 자료와 직접 취재원(사람) vs 다른 언론 의존

대다수 팩트체크 기사는 대체로 해당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취재원(사람) 혹은 1차 자료에 기초해 검증하였으나 다른 언론의 보도에 의존한 기사도 35건에 이르렀다. 예를 들어, 다른 언론의 보도에 의존한 대표적 기사로는, 조선일보의 기사(김진태, “홍준표 지사가 국회 운영위원장 관공비, 집에서 쓰게 한 것은 문제”)는 당시 다른 언론의 보도 및 타 언론의 녹취 파일을 검증의 근거로 내세웠다. 또한 매일경제의 기사(안, “스모그 프리 타워, 주변 미세먼지 60% 정화”)는 검증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국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중국 언론에서 보도된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표 4-16 독자성을 갖춘 기사

	독자성을 갖춘 기사		독자성을 갖추지 못한 기사
구분	취재원(사람)	1차 자료	다른 언론의 보도
기사건수	150	155	35

※ 기사에 사용된 증거는 중복 가능

#### ④ 불편부당성

불편부당성(impartiality)은 미국의 팩트체크 기관이 투명성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검증원칙이다. 불편부당이란 어느 편에도 서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으로 IFCN은 “하나의 정당을 중점적으로 검증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시했으며, 3대 팩트체크 기관도 정파와 무관하게 검증할 것과 정치적 중립 등을 주요 원칙으로 여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칙은 검증 과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검증의 결과물인 기사를 통해 불편부당성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미국의 팩트체크 기관들이 비판받은 이유 중의 하나는 진보 편향이라는 것이며 이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진보 후보보다는 보수 후보에 대한 검증이 더 많다면 이는 ‘검증 선택에서의 편향(selection bias)’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반박하는 학자들은 보수에서 더 거짓 발언이 많다면 더 빈번하게 검증 대상이 되는 것은 편향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이보다는 하나의 사안을 검증하면서 얼마나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불편부당성을 검증하는 데에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진보적 후보자의 발언을 검증한 결과 진보적 검증기관에서는 ‘진실’로, 보수적 검증기관에서는 ‘거짓’으로 검증결과가 나온다면 이는 불편부당성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이번 연구에서는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과 후보자의 검증이 관련돼 있었는지(선택의 편향), 그리고 하나의 사안에 대해 2개 이상의 언론사에서 동시에 검증하였던 ‘교차 검증’에서의 일치도 등을 토대로 언론사에 따른 검증의 편향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 ○ 언론사에 따른 검증 대상 선택에서의 편향 가능성: i) 발언자 ii) 진술문 내용의 주체

이번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팩트체크 기관의 불편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을 참고로 하여,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특정 정치인의 검증이 더 많이 이뤄졌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언론사에 따라 검증의 대상이 달라졌는지를 i) 발언자뿐 아니라, ii) 발언 내용(진술문)의 주체로도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홍준표 대통령직 후보자가 “나의 지지율은 20%가 넘는다”고 발언한 것을 검증하였다면, 발언자와 발언 내용의 주체가 동일하지만, 홍 후보자가 “문재인 후보자가 일심회 간첩단 사건 은폐하려고 김

승규 국정원장 사퇴시켰다”고 주장할 경우, 발언자는 홍 후보자이며 진술문 내용의 주체는 문재인 후보자가 된다. 또한 이 경우 팩트체크의 검증 대상은 홍 후보자뿐 아니라 문재인 후보자도 될 수 있다.

표 4-17 주요 언론사가 검증한 발언자의 빈도<sup>10</sup>

	홍준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합계
매일경제	3 (37.5%)	1 (12.5%)	2 (25.0%)	2 (25.0%)	8 (100.0%)
서울신문	1 (16.7%)	1 (16.7%)	2 (33.3%)	2 (33.3%)	6 (100.0%)
조선일보	8 (38.1%)	5 (23.8%)	2 (9.5%)	6 (28.6%)	21 (100.0%)
중앙일보	6 (37.5%)	8 (50.0%)	2 (12.5%)	0 (0.0%)	16 (100.0%)
한국일보	4 (33.3%)	2 (16.7%)	3 (25.0%)	3 (25.0%)	12 (100.0%)
SBS	13 (72.2%)	3 (16.7%)	2 (11.1%)	0 (0.0%)	18 (100.0%)
JTBC	7 (70.0%)	1 (10.0%)	1 (10.0%)	1 (10.0%)	10 (100.0%)
KBS	6 (37.5%)	4 (25.0%)	6 (37.5%)	0 (0.0%)	16 (100.0%)
합계	48 (44.9%)	25 (23.4%)	20 (18.7%)	14 (13.1%)	107 (100.0%)

분석 결과, 발언자의 검증에서는 주요 언론사별로 특정 언론인을 더 검증하는 경향이 발견되었으나, 발언 내용의 주체를 기준으로 한 분석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분석의 편리성을 위해, 언론사는 5건 이하의 검증을 한 4개 언론사(동아일보, MBN, YTN 등)를 제외하였고 발언자는 주요 대통령 후보자였던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등 네 명으로 제한하였다.

10 교차분석 결과에 따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chi^2(21, n=107)=34.2, p<0.05$ ]. 그러나 많은 셀의 빈도가 통계분석의 유효성을 갖추기 위한 '5' 이하에 머물렀다.

그 결과 8개 언론사가 4명의 후보자의 발언을 검증한 기사 107건 중 홍준표 후보자에 대한 기사가 48건으로 전체의 44.9%를 차지했으며, 문재인 후보자의 발언을 검증한 기사는 25건(23.4%), 안철수 후보자는 20건(18.7%), 유승민 후보자는 14건(13.1%) 등이었다. 홍준표 후보자에 대해 더 자주 검증한 언론사는 SBS와 JTBC로 각각 13건(72.2%)과 7건(70.0%)을 차지하였다.

한편, 문재인 후보자를 가장 빈번하게 검증한 언론사는 중앙일보로 8건(50.0%)이었으며 조선일보와 KBS가 각각 5건(23.8%)과 4건(25.0%)이었다. 안철수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검증에서는 언론사별로 큰 차이는 없었다.

**표 4-18** 주요 언론사가 검증한 진술문 주체의 빈도<sup>11</sup>

	홍준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합계
매일경제	3 (37.5%)	1 (12.5%)	3 (37.5%)	1 (12.5%)	8 (100.0%)
서울신문	0 (0.0%)	5 (55.6%)	2 (22.2%)	2 (22.2%)	9 (100.0%)
조선일보	7 (25.9%)	9 (33.3%)	10 (37.0%)	1 (3.7%)	27 (100.0%)
중앙일보	5 (35.7%)	5 (35.7%)	4 (28.6%)	0 (0.0%)	14 (100.0%)
한국일보	4 (26.7%)	5 (33.3%)	4 (26.7%)	2 (13.3%)	15 (100.0%)
SBS	5 (18.5%)	9 (33.3%)	13 (48.1%)	0 (0.0%)	27 (100.0%)
JTBC	6 (50.0%)	3 (25.0%)	2 (16.7%)	1 (8.3%)	12 (100.0%)
KBS	4 (26.7%)	4 (26.7%)	7 (46.7%)	0 (0.0%)	15 (100.0%)
합계	34 (26.8%)	41 (32.3%)	45 (35.4%)	7 (5.5%)	127 (100.0%)

둘째, 발언 내용의 주체로 보면 언론사별로 특정 후보자를 더 많이 검증하였다고 볼

11 교차분석 결과, 빈도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chi^2(21, n=127) = 23.7, p>0.05$ ].

만한 근거가 없었다. 즉, 언론사별로 검증 대상의 빈도에서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직 후보자 4인이 진술문 내용의 주체가 되어 검증을 받은 기사는 모두 127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기사는 안철수 후보자 45건(35.4%)에 대한 것이었으며 다음은 문재인 후보자 41건(32.2%), 홍준표 후보자 34건(26.8%), 유승민 후보자 7건(5.5%) 등의 순서였다. 한편, 진술문의 주체가 되어 검증의 대상이 된 후보자의 빈도는 언론사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홍준표 후보의 경우 JTBC와 중앙일보에서 각각 6건(50.0%), 5건(35.7%)이었으며,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서울신문이 5건(55.6%)이었다. 안철수 후보자는 SBS, KBS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더 빈번하게 검증하였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 ○ 교차검증 결과의 일치도

교차검증이 있었던 22개 사설에 대한 기사 52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19** 교차검증의 기술적 특징

일치	검증 내용	언론사	판정 결과
	심상정 후보 “文의 아동 수당 2분의 1로 줄어”	조선일보, SBS, 서울신문	대체로 사실 아님
	문재인 후보 아들과 관련한 취업특혜 논란이 있다	SBS, 서울신문, 한국일보	절반의 사실
	하천의 녹조현상이 하수유입과 기후 변화 때문이라는 홍준표 후보 주장	YTN, JTBC	사실 아님
완	유승민 “文의 17만 4000명 공무원, 9급 초봉만 줘도 연간 4조 3000억원…계산 안 맞아”	조선일보, 동아일보	대체로 사실
전	“北에 준 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더 많았다”는 문재인 후보의 주장	조선일보, 한국일보	사실 아님
일	“문재인 후보가 ‘송민순 회고록’ 관련 2007년 북한결의안 관련 입장을 정하는 과정에서 북한 입장 물었는지를 두고 말을 바꿨다?”	서울신문, 동아일보	대체로 사실
치	“안철수 후보 부인 김미경 교수 채용, 서울대가 채용계획 이전에 채용 결정했다”는 주장	SBS, 한국일보	사실 아님
	안철수 후보 “집권하면 장관들 사표부터 받겠다”며 차관체제로 국무회의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과연 가능할까?	한국일보, 조선일보	사실 아님

일치	검증 내용	언론사	판정 결과
	유승민 “안철수, 작년 7월엔 사드 ‘국민투표’ 하자 더니 이후 한미간 합의해 ‘어쩔 수 없다’ 말 바꿔”	조선일보, 매일경제	사실
	안철수 후보 “국가 간 합의 뒤 사드입장 변화”는 사실일까?	KBS, JTBC	대체로 사실 아님
불 일 치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의 말처럼 “홍준표 지사는 당선 돼도 재판 받으려 가야 하고, 유죄 확정 시 대통령직 상실”될까?	한국일보	대체로 사실 아님
		조선일보	절반의 사실
	문재인 “LTE 기지국 등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 투자는 이미 끝났으니 기본료는 필요 없다”	조선일보	사실 아님
		한국일보	대체로 사실 아님
	대선 후보 TV토론 팩트체크. 홍준표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북에 넘어간 현물 등이 통일부 자료로 44억 달러다”라는 발언.	한국일보	사실
		SBS	대체로 사실
	문재인 “개성공단 폐쇄로 12만 명 일자리 잃어”	JTBC	대체로 사실 아님
		KBS	사실 아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합의된 것” 사실인가	조선일보	사실 아님
		한국일보	사실
	홍준표 “동성애가 국방 전력을 약화시킨다”	JTBC	판단유보
		KBS	사실 아님
	홍준표 “김대중 · 노무현 정부 때 대학 등록금 자율화해서 등록금 113% 올랐다”?	조선일보	절반의 사실
		중앙일보	대체로 사실 아님
	안철수 “OECD의 공공 일자리 통계엔 우리나라 공공기관이나 위탁받은 기업은 빠졌다”	한국일보, 조선일보	절반의 사실
		SBS	대체로 사실 아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말한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창궐하고 있다”는 주장, 사실인가?	JTBC, SBS	대체로 사실 아님
		조선일보	사실 아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국공립 유치원 신설을 자체할 계획인가	매일경제, 한국일보	대체로 사실 아님
		동아일보, 서울신문	사실 아님
	유승민의 “국방백서에 북한군이 우리 주적이라고 나오는데”라는 발언, 사실은?	조선일보, 한국일보	대체로 사실 아님
		매일경제, 서울신문	절반의 사실
	홍준표 “소득분배 지니계수가 노무현 정부 때 가장 나빴다”	한국일보, 조선일보 KBS	사실 아님
		YTN	대체로 사실 아님
		중앙일보	절반의 사실

※ 정은령(2017). 팩트체킹 뉴스 의미와 한계. 〈관훈저널〉, pp.9-11 참조.

교차검증에서의 결과를 보면 22건의 사실 검증 중 10건(22개의 기사)은 완전히 일치하며, 나머지 12건 중에서도 10건(26개의 기사)의 경우 대체로 검증의 결과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판정의 결과가 ‘사실 아님’ 혹은 ‘대체로 사실 아님’ 등은 완전한 불일치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2건의 경우(4개의 기사)에는 완전히 다른 결과와 비교적 다른 결과를 내놓았다고 볼 수 있다. 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합의된 것인가”라는 검증에서 조선일보는 ‘사실 아님’으로, 한국일보는 사실이라는 결과를 내놓았으며, “동성애가 군사력을 약화시킨다”는 검증에 대해 JTBC는 판단 유보, KBS는 ‘사실 아님’이라는 판정결과를 제시하였다.

## ⑤ 판정의 근거

### ○ 실수, 잘못, 과장, 누락, 해석, 오도 가능성 등

국내 언론사에서 정치인의 발언 등의 진위를 검증한 뒤 진실 혹은 허위라고 판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사에서 가장 흔히 언급되는 것은 사실의 오류로 92건(52.8%)의 기사에서 발견되었으며, 다음은 해석상의 차이(65건, 37.3%), 사실의 과장(22건, 12.6%), 사실의 누락(17건, 9.7%), 사소한 실수(5건, 2.8%), 오도 가능성(3건, 1.7%)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 3. 연구결과의 요약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내 언론사에서 진행한 팩트체크 기사 174건을 미국 주요 팩트체크 기관의 검증 프로토콜을 기준으로 평가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형식 측면

국내 팩트체크 기사 중 정치인이나 정당인의 발언을 검증한 기사가 총 141건(81.0%)이었으며, 124건(71.2%)의 기사가 검증 대상의 발언 출처를 밝혔다. 또한 한 개의 기사에서 1건의 사실을 검증한 기사는 151건(86.7%)이었으며, 47건(27.0%)의 기사가 48시간 이후에 수정되었다. 검증 내용은 개인의 경력이나 특징 등에 대한 개인적 속성이 100

건(57.4%)으로 비개인적 속성 70건(40.2%)을 크게 앞섰다. 발언자에게 발언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요청하였음을 명시한 기사는 21건(12.0%)에 머물렀다.

## 2) 내용 측면

미국 팩트체크 기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실’을 검증한다는 것이다. 국내 언론사의 경우에도 대부분 사실을 검증하고 있었으나 ‘사실적 의견’으로 분류된 기사 혹은 단순 해석이나 “왜”를 설명하는 기사도 43건(24.7%)에 이르렀다. 따라서 검증하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결정한 뒤 검증에 나설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또한 일부 학자들이 검증하기에 부적절하다고 공격하였던 인과적 내용을 포함하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기사도 각각 32건(18.3%)과 18건(10.3%)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검증 대상인 ‘사실’ 혹은 ‘사실적 의견’을 선택할 때 검증 가능성에 대한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국내 언론사의 사실검증 기사의 길이는 평균 2,002자로 나타났으며, 기사당 등장하는 총 취재원은 3.57건이었다. 국내 기사의 길이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할 때, 기사 길이는 다소 길었으나 전체 취재원의 숫자는 더 많지 않았다. 한편, 긍정적인 측면은 대부분 팩트체크 기사가 이전 취재원 —서로 대립되는 양측의 입장— 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그렇지 않다고 판단된 기사는 8건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언론사에서 양측의 입장이 대립되는 사안을 검증할 때 비교적 양측의 입장을 모두 포함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사실을 검증할 때에는 대체로 1차 자료(original document)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언론의 보도에 의존하거나 언급한 기사는 35건(20.1%)이었다.

이에 비해 검증과정의 투명성의 경우 대체로 부족한 편이었다. 우선 취재원의 사용에서 실명을 사용한 투명 취재원 숫자는 평균 2.64건에 머물러 국내 선행연구결과 1면에 사용되는 투명 취재원 숫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익명 취재원의 사용이 팽배하였다. 기사당 사용된 익명 취재원의 숫자가 평균 0.89건이었으며, 전체 기사 중 익명 취재원을 사용한 기사는 절반을 조금 웃도는 90건(51.7%)에 이르렀다. 더 나아가 익명 취재원을 사용한 이유를 밝힌 기사도 단 2건에 불과하였다. 또한 검증기사를 수정하였을 경우 수정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힌 기사는 4건에 머물렀다. 이러한 팩

트체크 관행은 미국 팩트체크 기관의 투명성 기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3) 불편부당성

국내 언론사의 팩트체크가 불편부당한지를 검증한 결과에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선행연구에 따라 두 가지 방법, 즉 i) 언론사에 따라 후보자의 선택에서 편향이 있는지(selection bias)와 ii) 두 개 언론사 이상에서 검증한 교차검증 결과에서의 일치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검증 선택에서의 편향은 발언자를 기준으로 한 분석에서만 일부 확인되었고 진술문 내용의 주체를 기준으로 한 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교차검증 결과에서의 판정 일치도도 매우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적어도 19대 대선을 앞둔 국내 언론사의 팩트체크에서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특정 후보자의 발언을 더 집중적으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동일한 사실(fact)을 여러 언론사가 검증하였을 경우에도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진위 판정에서 일치된 결과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팩트체크와 법률적 개념

### 1. 팩트체커 인터뷰

2018년 6월 현재 언론사에서 팩트체크 기사를 담당하고 있는 8명의 기자에게 팩트체킹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을 하였다. 응답한 기자들은 전국 일간지, 방송사, 종합편성 채널, 인터넷신문 등 다양한 매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팩트체커들이며, 이들의 언론사 근무 경력은 최소 9년에서 최대 20년까지였다. 질문에 답한 기자들은 이름이나 소속이 드러나지 않기를 요청했으므로, 이하 <기자 1>부터 <기자 8>까지로 처리하여 답변을 정리하였다.

우선 응답한 기자들이 소속된 언론사에서 공유되는 팩트체크 규칙이나 절차가 있는지 물어보았다. 8개의 언론사 중 명확한 팩트체크 원칙이나 규정을 갖고 있는 곳은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인 ‘뉴스톱’이 유일하였다. 다른 1개의 언론사는 명시적으로는 팩트체크 규칙이 없으나, 관례상 1) 검증 대상을 보도국 전체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2) 검증 시 당사자의 입장을 반드시 청취한다, 3)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지를 꼭 살핀다, 4) 해당 분야의 취재부서 검증을 한 번 더 거친다, 5) 검증 결과를 보도국에서 공유한다 등의 규칙이 있다고 답했다.

팩트체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해져야 하므로 국내 언론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팩트체크 규칙이나 절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뉴스톱이 자사 홈페이지에서 공개

하고 있는 팩트체크 원칙 규정(Fact-checking code of principles)은 다음과 같다(〈표 5-1〉 참조).

표 5-1 뉴스톱의 팩트체크 원칙 규정

#### ① 초당파성과 공정성에 대한 약속

우리는 팩트체크를 할 때마다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여 주장을 팩트체크한다. 한쪽 진영의 팩트체크에만 집중하지 않는다. 팩트체크 과정에서 동일한 절차를 따르고 증거가 우리의 결론을 이끌도록 한다. 우리는 팩트체크하는 사안과 관련해 특정 정책을 지지하거나 그 입장 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② 자료출처의 투명성에 대한 약속

우리는 독자들이 우리가 도출한 결과에 대해 스스로 검증할 수 있기를 바란다. 가능한 자세 하게 모든 자료출처(Sources)를 제공해 독자들이 우리의 작업을 반복해 볼 수 있게 한다. 단 취재원의 신변안전이 훼손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한 경우에도 우리는 최대한 세부사항 을 공개한다.

#### ③ 재원 및 조직의 투명성에 대한 약속

우리는 재원 기금(Funding)에 대해 투명하게 밝힌다. 만약 다른 단체나 기관으로부터 재정 적 지원을 받는다면, 해당 자금이 우리의 보고서에서 도출한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한다. 조직의 모든 핵심 인물의 전문적인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조직 구조와 법적 지위를 설명한다. 독자들이 우리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제시한다.

#### ④ 방법론의 투명성에 대한 약속

우리가 선택, 연구, 작성, 편집, 출판, 수정하기 위해 사용한 팩트체크 방법론에 대해 설명한다. 독자들이 팩트체크에 대한 주장을 우리에게 보낼 것을 권장한다. 우리는 팩트체크의 이유와 방법에 대해 투명하게 밝힌다.

#### ⑤ 개방성과 정직한 수정에 대한 약속

우리는 수정정책을 게시하고 철저히 준수한다. 수정 정책을 지켜 명확하고 투명하게 수정하며 가능한 최신 버전을 독자들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한다.

기자들에게 어떠한 소재가 팩트체크 아이템으로 선정되는지 물어보았다. 대부분의 기자들이 정치인의 발언을 주로 팩트체크 대상으로 삼는다고 답했다. <기자 4>는 매일 정당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유력 정치인의 주요 발언 등을 포털에서 찾아본 뒤 그 중에서 진위가 불분명하거나 거짓으로 의심되는 내용을 발견하면 다른 팩트체커와 기사 가치가 있을지 상의하여 아이템으로 선정한다고 답했다. <기자 6>은 팩트체크팀에서 1) 잘못된 주장, 거짓 정보가 포함돼 있는지, 2) 그 주장/정보가 대중의 인식을 바꾸거나 제도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3) 검증을 통해 허구성을 밝혀낼 수 있는지(검증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아이템을 선정한 뒤 보도담당 사장 및 보도국장과 각 부서장이 참여한 보도국 전체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팩트체크 아이템을 정한다고 답했다.

팩트체크를 실시하면서 검증하기에 어려운 대상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자들이 ‘정치인 등 권력이 있는 자’라고 답했다. 특히 성범죄 의혹 등 정치인의 사생활(<기자 1>) 내지 정치인에 대한 인신공격적 발언(<기자 3>)을 검증하기 어렵다고 했다. <기자 6>은 정치인의 경우 “발언의 취지는 그것이 아니었다”며 사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하였다. 더구나 검증 전 해명을 듣게 되면 검증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정치인들이 기존 발언을 뒤집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한편, <기자 4>는 ‘전문가의 발언’에 대해서 팩트체크가 어렵다고 답했다. 기자가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특정 전문가 발언 중에서 오류가 있는지 알기 어렵고, 오류를 발견하더라도 그것을 증명하는 데는 전문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팩트체크 과정에서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팩트체크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방증한다.

팩트체크 과정에서 취재원이나 자료를 찾을 때 경험한 어려움에 대해 팩트체커들에게 물어보았다. <기자 6>은 정부 정책을 검증할 때 정부에서 나온 ‘통계’를 근거로 쓰지 않도록 주의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책적 목표에 따라 필요한 통계를 작성하고 발표 할 수 있으므로 정부 통계를 바탕으로는 정확한 팩트체크를 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기자 1>은 팩트체크의 바탕이 되는 자료들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고 답했다.

정치인이 ‘과거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여 경제를 발전시켰다’고 주장할 경우 과거 경제

지표를 토대로 살펴봤을 때 경제성장이 그 예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자 1>

<기자 5>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상충하는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언급했다. 즉, 관련자들이 인터뷰를 거부하거나 발언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원본 데이터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결국 기사화되지 못하고 보류되는 아이템이 많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문제가 된 발언을 직접 듣지 못한 경우에는 나중에 팩트체크를 하면서 당시의 상황이나 맥락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진술도 있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발언 당사자가 본인의 발언에 대해 해명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 일입니다. 팩트체커는 검증의 대상이 된 발언이 행해졌던 현장에 있지 않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발언의 맥락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추후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나 발언 당사자들이 당시 상황이나 맥락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기자 4>

팩트체크 후 판정결과를 바로미터(barometer)나 판정표 등을 사용하여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기자들의 의견이 나뉘었다. 판정결과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5명의 기자들은 독자 입장에서는 팩트가 맞는지 틀린지가 가장 궁금 할 것이므로 명확한 결과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팩트체크의 강점은 명확함입니다. 그 명확함을 간결하면서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판정표입니다. 독자들은 판정표만 봐도 팩트체크 기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판정표가 주는 효과가 큽니다. <기자 5>

반면, 경우에 따라서는 판정을 내리는 것이 맥락을 단순화시키거나 사실관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사안마다 다른 판정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모든 팩트체크 기사가 지표를 이용하여 판정결과를 내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사안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독자들에게 보여 줘야 한다면 굳이 지표를 이용하지 않고 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 거짓 여부를 독자들이 궁금해 하거나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을 때는 지표를 사용합니다. 지표를 쓰면 독자들의 눈길을 쉽게 사로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복잡한 맥락을 단순화시키는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두 방식을 혼용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기자 4>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종종 생기기 때문입니다. 기사가 의미 있더라도 판정 자체 때문에 기사의 가치가 흐려지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판단을 내리는 기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방법이 일장일단이 있는 만큼 언론사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7>

Factcheck.org의 방식을 가장 선호합니다. 이 기관은 표면적으로 사실인지 여부를 설명하지만, 그보다는 맥락적 설명에 집중합니다. <Is Illegal Immigration Linked to More or Less Crime?>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보면, 트럼프와 샌더스의 주장이 충돌하는 것으로 팩트체크가 시작됩니다. 누가 맞는지를 앞부분에 다루긴 하지만 그보다는 연구결과 및 통계가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를 설명하고, 통계도 서로 부딪히고 있다는 점과 정부에 따라서 범죄통계의 결과가 뒤바뀌는 현실, 그래서 이 문제가 논쟁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설명합니다. 이런 방식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기자 6>

팩트체커들에게 익명 취재원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러한 익명 취재원의 사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응답자들은 익명 취재원 사용에 따른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정보원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익명 사용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즉, 취재 관행상 익명 취재원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취재원 노출에 따른 위험을 피하거나 검증 대상자의 소송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취재원의 실명을 밝히기가 부담된다는 것이다. 또한 취재원이 신분 노출을 막아 달라고 요청했거나, 취재원이 내부고발자일 경우 현실적으로 익명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미국만큼 정보공개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컨대 압수수색영장이나 실명이 노출되어 있는 판결문의 경우 한국에서는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취재할 때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익명 취재원입니다. 따라서 취재원을 보호해야 하는 목적이 분명하다면, 익명 취재원 사용이 신뢰도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남용되는 유형의 익명 취재원은 문제가 됩니다. 가령, 늘 같은 변호사나 교수에게서 인터뷰를 떠는 기자들이 익명 취재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팩트체크에서는 익명의 취재원이 2명 이상 사용될 경우 크로스체킹이 됐다는 것이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순한 익명 처리가 아니라 취재원의 업종이나 경력 등을 명시하여 투명성과 신뢰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기자 3>

익명 취재원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인터넷 시대의 특성을 들기도 하였다. 온라인에 기사가 거의 영구히 남아 있으며, 과거 기사 검색도 손쉬운 상황에서는 취재원들이 실명이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을 더욱 꺼린다는 의견도 있었다.

과거 신문·라디오·TV와는 달리 이제는 취재 내용이 한번 보도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영원히 기록으로 남게 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최근 언론사는 “당시에는 그런 취지로 말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거나 “상황이 종료되었으니 기사에서 삭제해 달라”는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인들조차 실명 보도를 꺼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도 바뀐 것입니다. <기자 5>

이처럼 기자들은 익명 취재원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으나, 팩트체크의 성격상 취재원의 실명을 밝히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익명 취재원은 취재원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사용되어야 하며, 취재의 편의성을 위해 익명 취재원이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각 언론사는 팩트체크 원칙이나 규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기준에 행해진 팩트체크에 대해 개선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이에 대해 팩트체커들은 솔직하고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현재 한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팩트체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뚜렷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팩트체크가 행해지면

서 실질적으로는 팩트체크 기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팩트체크라는 이름이 남발되는 현상이 지적되었다. 특히 팩트에 대한 판정이나 엄정한 조사가 없이 팩트체크라는 이름표를 기사에 붙이는 것에 대해 팩트체커들은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팩트체크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지 요즘엔 스포츠 기사나 연예인 관련 기사에도 팩트체크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최근 모 연예인의 병세와 관련된 공방에 대해서도 팩트체크라는 이름으로 기사가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기자 3〉

팩트체크란 타이틀이 붙여진 기사임에도 판정과 관련된 내용이 없거나, 제목은 팩트체크이나 기사 내용은 그와 무관한 경우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기자 5〉, 〈기자 6〉). 사실 검증에 충실하지 않은 채 정부의 해명자료를 그대로 옮겨 적은 뒤 팩트체크 타이틀을 붙이거나(〈기자 1〉), 일방 당사자의 주장만을 보도하는 팩트체크 기사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일부 팩트체크 기사 가운데는 사실 검증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나 중립적인 전문가의 견해를 바탕으로 사실을 검증하기보다는, 검증 대상의 견해와 반대되는 취재원의 주장을 실어주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쪽의 주장이 상반될 경우 객관적인 자료와 취재원을 통해 어느 쪽이 사실이고 거짓인지 판정하는 단계까지 가야 할 것입니다.  
〈기자 2〉

통계나 숫자에 대한 팩트체크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통계나 숫자를 체크하는 것이 발언을 검증하는 것보다 비교적 쉽고 명확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팩트체커들은 그 이유를 추측했다.

관계자가 발언하면 이를 통계자료 등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 팩트체크 기사의 패턴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마감시간의 한계나 팩트체크 기사에서 실수해서는 아니 된다는 부담감 등이 그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사 작성 기간을 길게 잡고 호흡을 길게 하면서 사실상 탐사보도의 형식을 팩트체크 기사에 적용해 보는 것도 시도해 볼 만할 것입니다.〈기자 7〉

기사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 검증결과를 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공개가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기자 8>). 팩트체킹의 구체적인 원칙과 방법론을 정해 두고 이에 따라 검증결과를 제시해야만 일관성 있는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고 그 판단결과도 더욱 수용자들의 신뢰를 얻게 될 것이다. 또한 기사 내에 하이퍼링크나 관련자료 첨부를 통해 검증에 사용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데도 이러한 과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기자 4>).

이상의 팩트체커 인터뷰를 종합해 보면, 명확하고 구체적인 팩트체크 원칙이나 규정의 부재가 현행 팩트체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그 결과 팩트체크에 적절하지 않는 내용이나 포맷을 갖춘 기사가 팩트체크 타이틀과 함께 남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실 검증의 전 과정, 즉 대상의 선정과 검증방식, 결과의 게재 까지 합리적인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마동훈·오택섭·김선혁, 2013, 34쪽).

통계나 숫자의 검증에 팩트체크가 치중되고 있는 것도 개선될 점으로 드러났다. 취재원 공개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팩트체커들의 의견도 있었지만, 익명 취재원이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는 현상도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보인다. 익명 취재원의 경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사용되어야 하며, 그 경우에도 익명 취재원이 사용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기사에서 공개해야 할 것이다. 팩트체크 판정결과를 바로미터 등을 사용하여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팩트체커들의 의견이 나뉘었으며, 기사 주제나 성격에 따라 판정결과 표기를 유연하게 사용하자는 제안도 설득력이 있었다.

## 2. 관련된 법률적 개념

팩트체커들은 검증 대상자들의 소송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더구나 팩트체크 기사는 그 파급력으로 인해 검증 대상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는 경우도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 요건으로서의 ‘사실’은 무엇인가. 또한 기사는 ‘객관적이고 진실 되어야 한다’고 할 때 기사의 객관성과 진실성은 무엇인가. 법률적 의미에서의 사실과 객관성, 진실성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 1) 사실(事實)과 의견(意見)

팩트체크의 대상인 ‘팩트(fact)’란 ‘사실(事實)’을 뜻한다. 법률적 관점에서 사실(事實)은 의견(意見)과 대치되는 개념이다. 법률상 ‘사실’의 의미는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자주 논의되는데,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2</sup> 즉,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팩트를 언급하는 것인 ‘사실의 적시’가 필요한 것이다.

팩트체크 기사는 ‘사실의 적시’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으므로, 팩트체크로 발언이 검증된 자는 검증 내용에 의한 명예훼손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 문제된 검증 내용과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의 표명’에 불과한 것인지 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어느 팩트체커가 “정치인 A가 내세운 공약은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라서 현실 가능성에 매우 낮다”고 판단하였다면 이는 정치인 A의 공약에 대한 ‘사실의 적시’인가 아니면 팩트체커의 ‘의견 표명’에 불과한가. 만약 사실의 적시라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으나, 의견 표명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면 법원은 사실과 의견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법원은 사실적 주장이란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라고 본다. 또한 법원은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이라서 “구별기준 자체가 명확하거나 일의적이기 어렵다”고 하였다. 사실적 주장과 의견 표명을 구별할 때는 원보도의 객관적 내용과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래의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하여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전체적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원보도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시하였다.<sup>13</sup> 언론 보도에서 사실과 의견을 단번에 구별해 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휘와 문맥 및 문장의 흐름, 사회적인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사안별로 판단하

---

12 형법 제33장은 명예에 관한 죄를 다루고 있으며, 제307조 명예훼손죄를 비롯하여 제308조 사자(死者) 명예훼손죄, 제309조 출판물 명예훼손죄, 제311조 모욕죄 등을 규정하고 있다.

13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2007. 6. 14. 선고 2006다21491, 21507 판결.

겠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인 것이다. 최근 대법원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사실의 적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sup>14</sup>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곁으로 보기에도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글의 집필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체계 및 전개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해볼 때,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어떠한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견해나 그 근거를 비판하면서 사용한 표현의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따라서 발화자가 외견상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것처럼 표현했지만, 정황상 발화자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서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의 적시는 반드시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표현하더라도 전체 취지를 고려했을 때 사실의 존재가 암시된다면 사실의 적시로 인정될 수 있다.<sup>15</sup> “내 의견에 의하면”이라든지 “내 생각에는” 등의 표현을 덧붙이더라도 사실적 주장이 있었다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로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 언론이 “일설에 의하면”이라고 표현을 시작하면서 타인의 주장이나 풍문을 전파하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시청자나 독자가 이를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면 언론이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도 있다.<sup>16</sup>

신문 기사에서 제목에 “검찰 자기 식구 싸고돌기”라는 표현을 쓰거나, 본문에서 “축소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결과적으로 (중략) 증거 등을 없앨 충분한 시

---

14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15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16 서울지법 1998. 8. 19. 선고 97가합93499 판결.

간을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며 이는 사실의 적시일까 아니면 의견의 표명일까. 이러한 표현은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법원은 ‘검찰이 검찰 직원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기자의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았다.<sup>17</sup>

의견 표명일지라도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이라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어느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은 A교수에 대해 “김일성 찬양론자로 머리가 돌아 버린 공화국 영웅” 등의 표현을 사용한 뒤, A교수로부터 소송을 당하였다. A교수가 제기한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표현은 ‘지나치게 모멸적이고 인신 공격적이어서 언론의 의견표명으로서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며 언론사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다.<sup>18</sup>

신문이 ‘주사파’ 또는 ‘종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도 ‘이러한 표현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언론의 항변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표현은 특정인을 반사회세력으로 몰아가고 그의 사회적 평판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이다.<sup>19</sup>

법원의 판단을 종합해 보면, 팩트체크 기사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이라면 ‘사실의 적시’에 해당될 것이다. 또한 그러한 사실의 적시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나 사실의 적시가 아닌 기자의 의견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없지만 모욕죄는 성립될 수 있다. 또한 언론에서 지나치게 모멸적 이거나 인신공격적인 의견표명을 할 경우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언론이 사실관계를 적시하면서 “필자의 생각에는”, “항간의 소문에 따를 경우” 등의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명예훼손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

17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다16804 판결.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가합506507 판결.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15. 선고 2012가합34257 판결.

## 2) 기사의 객관성

법률적 관점에서 객관성이란 무엇인가. 법원은 언론과 관련된 사건에서 공정성이란 “양쪽 입장을 골고루 균형 있게 전달하는 보도 태도”를 의미하고, 객관성이란 “왜곡 없이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보도 태도”라고 판단하면서 언론보도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의 의미를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판결에서 법원은 공정성과 객관성의 개념 및 판단기준을 혼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박아란, 2016). 비록 저널리즘 원칙 측면에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이기는 하나, 법원에서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때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다 명확하게 분리되어 판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언론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해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안 중 대표적인 것은 2010년 천안함 사건의 합동조사단 최종보고서에 의문을 제기한 KBS <추적 60분> ‘천안함’ 편에 대한 사건이 있다. 이 방송이 나간 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내용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배하였다며 경고처분을 내렸고, KBS는 제재조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객관성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sup>20</sup>

방송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다루었는지 여부는 “그 방송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방송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 당해 방송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위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법원은 보았다. 따라서 당해 방송이 정부가 입론한 과학적 사실이 합리적인지를 검증하려 하였고, 취재 및 보도에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며, 방송에서 논리적 의문을 제기한 정도에 그쳤다면 “충분히 신중한 보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객관성 의무를 다하였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다수의 입법례에서는 국가에 의한 공정성 심사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 언론 자유의 핵심내용이며 국가는 보도 자료를 이용하여 당해 보도에 대해 스스로 반박하고 잘못된 정보를

---

<sup>20</sup> 서울고등법원 2015. 2. 10. 선고 2014누5912 판결.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1632 판결 참조.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허위내용을 담고 있거나 진실을 오인케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는 언론 보도에 대한 제재권한 행사에 극히 신중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언론 자유 보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하에서는 미국의 설리번 판결에서 제시된 것처럼 공적인 토의는 우리 정부의 본질적인 원칙이자 정치적 의무이며, 이러한 토의는 정부나 공직자에 대한 격렬하고 신랄하며 가끔은 불쾌할 정도의 날카로운 공격이 포함된다고 할지라도 결코 억제되어서는 안 되며 가급적 광범위하고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하여 정부 기관의 공식적 조사발표를 대상으로 하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언론자유의 보장 필요성이 더더욱 커진다고 할 것이다. 이로써 진실하고 투명하며 다양하고 자유로운 공개토론의 장이 마련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할 수 있고, 이러한 개방된 정치체제와 언론의 자유 보장이야말로 표현매체의 기술적·사회적 발전으로 국경이라는 물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오늘날의 지구촌에서 우리나라가 누릴 국가안보를 위한 최고의 방책이 되기 때문이다.

공적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더욱 보장될 필요가 있으므로 법원은 해당 보도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배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KBS의 승소로 확정되었다.

이러한 판결을 살펴보건대,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 표현을 하거나 논리적 의문을 제기하는 등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도의 경우 언론의 자유가 더욱 강하게 보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팩트체크 기사가 왜곡 없이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으며 공익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객관적 보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3) 기사의 진실성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에 규정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위법성 조각 사유를 규정하

고 있다. 즉, ‘진실성’과 ‘공의성’이 위법성 조각의 요소인 것이다. 그렇다면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닐 경우에는 모두 처벌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우리 법원은 ‘상당성’ 요건을 추가하여 진실성의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였다.<sup>21</sup>

면책요건으로서 진실성은 모든 팩트에 있어서 완벽하게 사실에 부합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즉, 진실성이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는 뜻으로서 세부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었더라도 무방하다.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는 ‘숨 쉴 공간(breathing space)’이 있어야 한다면서 진실 부합 여부는 “전체적 취지가 중시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부분까지 완전히 객관적 진실과 일치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다.<sup>22</sup>

앞서 언급하였듯이, 표현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항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표현을 한 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다.<sup>23</sup> 오보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면책시키는 법리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조화를 위한 것이다(박용상, 2008). 그렇다면 ‘진실이라고 오인할 만한 상당한 이유’ 즉 ‘진실 오인의 상당성’이란 무엇인가. 이 또한 일률적으로 개념을 정의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으며,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배경,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판단하고 있다. 법원은 표현을 한 자가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sup>24</sup>

특히 법원은 언론 보도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는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진실 보도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살펴서 상당성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자가 의혹이 있는 사실에 대해 관계자의 증언을 폭넓게 확보하여 취재하는 등 정확한 보도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 정황이 있다면 진실 오인에 상당성이 있다고 보았다.<sup>25</sup> 2011년에는 어느 방송 뉴스에서 A가 개발 호재가 있다고 속여 임야를 사기 분양하였

---

21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도3191 판결.

22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23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도3191 판결.

24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24624 판결.

25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도3191 판결.

다는 내용을 보도한 뒤, 방송사가 A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다. 이 사건에서 기자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군청 공무원 및 부동산중개업자 등을 취재하였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된 임야의 등기부등본, 지적도,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들을 수집하였으며, 수사가 진행 중인 지방검찰청에도 수사 내용을 문의하여 사기죄로 기소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법원은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기자가 이렇게 노력한 점을 인정하여 언론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sup>26</sup>

이러한 판결은 팩트체크 기사를 작성할 때도 참고가 될 것이다. 논란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자에 대해 인터뷰를 시도하는 한편, 관련 서류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비록 팩트체크한 내용에 사소한 오류가 있을지라도 ‘진실 오인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팩트체커가 면책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자가 취재과정에서 진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법정에서 상당성이 부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 뉴스 프로그램에서 “마취 환자 방치시킨 위험한 압수수색”이라는 제목으로 경찰이 수술실에 난입하는 등 무리한 압수수색을 하여 환자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내용이 보도된 적 있다. 원고인 경찰은 허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면서 방송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도 내용이 명백한 허위를 담고 있으며, 자료화면을 사용하면서도 ‘자료화면’이라는 자막 없이 배경화면으로 내보냈고, 당시 수술실의 환자가 아니었던 사람을 당사자인 양 인터뷰를 한 것은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솔한 공격”이라고 보아서 언론에게 1천만 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했다.<sup>27</sup>

이외에도 기자가 직접 취재를 하지 않고서 다른 기자의 기사를 참조하여 기사를 썼거나,<sup>28</sup> 피의자가 범행혐의를 받고 있을 뿐임에도 마치 자신의 직접 취재에 의하여 그 범행이 확인된 것처럼 단정적으로 기사를 게재한 경우에도 상당성이 부인되었다.<sup>29</sup> 비리 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일방적 제보만을 바탕

---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8. 선고 2011가합65346 판결(확정).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가단524634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나34171(확정).

28 대법원 1996. 5. 28. 선고 94다33828 판결.

29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판결.

으로 기사를 쓴 경우<sup>30</sup>에도 진실 오인의 상당성이 부인되어 결국 기자가 법률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따라서 법정에서 기사의 진실성 내지 진실 오인의 상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기자가 팩트체크 과정에서 엄정한 노력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4) 맷으며

2017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다수의 팩트체크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이 되거나 민·형사상의 고소가 제기되었다. 물론 팩트체크 내용에 허위가 있거나 심각한 오류가 있다면 당연히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청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고, 법정에서도 그로 인한 민사적·형사적 책임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이러한 팩트체크 기사에 대해 중재신청 내지 소송의 위협을 가하는 자가 주로 공인(公人)들이라는 점이다. 공직자, 정치인 등 공인이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경우 기자나 언론사는 사인(私人)이 제기하는 명예훼손 소송보다 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결국 공인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은 언론사와 기자에게 심각한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발생시키며, 언론인은 공인과 관련된 추후 보도에서 자기검열(self-censorship)을 시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언론인들은 공인에 대해 보도할 경우 소송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거나 외부로부터 간접적으로 압력이나 회유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놓았다(박아란·김민정·최지선, 2017). 또한 법원이 공직자, 공인, 공적 인물, 유명인 등의 용어를 혼용하고 있으며, 특히 방송사를 상대로 한 공적 인물의 명예훼손 소송은 비판적 보도나 의혹 제기를 봉쇄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학계의 비판도 있다(이승선, 2007). 공인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일관적이지 않아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공익적 사안에 대한 보도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었다(이재진, 2018).

팩트체크의 주된 대상은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 등 권력이 있는 공인이 될 수밖에 없다. 공인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들은 언론으로부터 더욱 엄격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공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 제기도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

30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민주적 시민사회가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인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보도가 더욱 장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인에 대한 팩트체크가 소송의 위협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며, 언론의 자유 확대를 위한 법리가 연구될 필요가 있다.



## 팩트체크 가이드라인

### 1. 새로운 저널리즘 양식으로서의 팩트체크 기법

팩트체크 저널리즘은 “그는 이렇게 말했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발언자의 주장 을 기자의 개입이나 판정 없이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을 사실의 전달이라고 간주하지 않는다.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비난에 직면하더라도 정치인 공직자 등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는 중요한 정책을 집행하거나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공적 인물의 진술을 검증하고 사실인 것처럼 회자되는 의심쩍은 정보들의 사실성 여부를 탐색한다.

그러나 팩트체킹 저널리즘은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오던 객관주의 취재 기법의 원칙들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정성이나 객관성의 엄격한 적용을 바탕으로 ‘판정(verdict)’이라는 어렵고 논란에 빠지기 쉬운 과제를 수행한다.

이 장에서는 미국의 팩트체킹 저널리즘 수행기관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원칙들을 팩트체킹의 각 단계별로 준용하여 한국의 팩트체킹 저널리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미국의 예를 준용하는 이유는 미국 모델이 한국의 팩트체킹 현실과 유사하게 전통적인 언론사가 팩트체킹의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 1) 검증 대상은 사실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발언의 진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검증의 대상이 물리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사실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미국의 모든 팩트체크 기관이 제1원칙으로 제시하는 것처럼 의견은 판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실 혹은 사실에 기초한 의견이 판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검증할 것인가를 선정할 때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

미국의 팩트체킹 연구에서 비판되었던 것처럼(Uscinski & Burtler, 2013),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정치적 수사, 일부 사실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무엇이 원인이고 결과인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인과적 주장들은 조심스럽게 제외해야 한다.<sup>31</sup>

## 2) 조사(research)는 발언자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치인이나 공직자의 발언, 정부의 발표 등을 검증할 때는 발언 혹은 자료를 발표한 당사자로부터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미국의 팩트체킹 저널리즘에서는 검증 대상의 사실여부를 입증할 책임이 1차적으로 발언 당사자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당사자의 주장이 충분히 않거나 오류가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 검증을 시작하게 된다.

발언 당사자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경제적인 조사 방법이기도 하다. 해당 발언의 근거로 사용된 자료에 도달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당사자에게 자신의 발언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취재원에 대한 반론권을 보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발언자는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발언이 팩트체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팩트체크의 결과를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것이 아니라 팩트체크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발언자가 제시하는 근거와 다른 증거들을 수집함으로써 팩트체커는 이견(異見)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

31 예를 들어 A라는 정치인이 자신이 편 특정 정책으로 실업자가 줄었다는 주장을 했을 경우, 그 정책 이외에도 실업자가 줄어들 수 있는 다양한 변인이 존재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정책의 효과만을 특정하여 사실인지 여부를 판정하기는 어렵다.

### 3) 조사의 출처는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도 정치적 입장, 과학적 해석의 차이 등으로 인해 반대되거나 모순을 일으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팩트체커는 이러한 모든 해석의 가능성들에 열린 태도를 갖고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사실을 다룬 정치인의 발언을 검증할 경우, 그 정치인과 정치적 태도가 같은 전문가의 분석만이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입장의 전문가의 분석도 참고해야 한다. 이미 틀 지어진 결론에 맞추어 편의에 따라 출처를 선별적으로 고르지 않아야 한다.<sup>32</sup>

팩트체커는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삼각측량(triangulating the truth)으로 비유되는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비교하여 검토해야 한다.

### 4) 증거는 물적 토대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팩트체크에서 동원한 증거는 취재원으로부터 얻은 몇 개의 인용구로 충분하지 않다. 공신력 있고 당파적이지 않은 기관으로부터 나온 통계자료, 법원 판결, 학술 논문 결과, 측정의 질과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는 측정치 등 단단한(hard) 물적 자료를 근거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 5) 최대한 익명 인용을 배제한다.

폴리티팩트는 “익명 인용자가 진실을 폭로할 수는 없다”는 핵심 수칙을 갖고 있다. 인용의 출처가 밝혀질 경우, 출처가 된 취재원의 신변이 위험해지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기명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 익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을 때도 가능한 자세히 해당 취재원의 배경을 밝힘으로써, 출처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

32 기자들을 위한 팩트체크 재교육 과정인 SNU 팩트체크 디플로마에 참여했던 한 팩트체커는 “취재를 시작하면서 이미 결론에 이를 수 있는 어떤 틀(frame)을 정해 놓지 않고, 수집된 증거들을 기반으로 사실과 거짓 어느 쪽으로도 판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둔다는 점에서 팩트체크는 기존의 취재보도와 달랐다”고 진술했다(필자 기록).

## 6) 자료의 출처를 독자들에게 투명하게 밝힌다.

팩트체킹의 특징은 독자들이 기자가 한 것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기자가 판정한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를 수 있는지 스스로 검증해 보도록 취재과정에서 획득했던 모든 정보를 최대한 독자들에게 공개한다는 데 있다.

판단의 근거가 된 출처의 온라인링크, 텍스트의 PDF 등 모든 증거들을 기사 속에 하이퍼링크 등으로 삽입해 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7) 판정결과는 가장 나중에 밝힌다.

팩트체크 기사의 서술은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밝힘으로써 판정결과에 대한 설득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판정결과는 보통의 역피라미드 형식처럼 서두에 밝히는 것이 아니라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서술한 뒤 마지막에 기술한다.

## 8) 오류는 공개적으로 즉각 수정한다.

팩트체크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단순한 기술상의 오류부터 시작해 판단의 근거가 됐던 출처의 오류가 발견되는 등 조사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날 수도 있다. 오류는 팩트체커가 발견할 수도 있지만, 팩트체크된 기사의 독자들로부터 제기될 수도 있다.

오류를 즉시 수정하는 것은 팩트체크의 불완전함을 드러내는 것이기보다는 신뢰도를 높이는 길이다. 수정할 때에는 수정의 이유가 공개되는 것이 독자들로 하여금 팩트체크 기사의 투명성에 대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이상의 주요원칙을 표로 정리하면 <표 6-1>과 같다.

표 6-1 팩트체크의 주요 8개 원칙

	주요원칙	내용
1	검증대상은 사실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의견은 검증의 대상이 아니다. 사실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주요원칙	내용
2	조사는 발언자로부터 시작한다.	검증 대상의 사실성을 입증해야 할 1차적인 책임은 이를 주장한 발언자에게 있다. 검증 내용에 대한 확인을 발언자로부터 시작함으로써 당사자를 팩트체킹의 과정에 참여하게끔 한다.
3	조사의 출처는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	이견(異見)을 수용해야 한다. 찬성과 반대의 양자 의견을 다 청취한 뒤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삼각 측정을 수행한다.
4	증거는 물적 토대를 가진 것 이어야 한다.	공신력 있고 당파적이지 않은 기관으로부터 나온 통계자료, 법원 판결, 학술 논문 결과, 측정의 질과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는 측정치 등 단단한(hard) 물적 자료를 근거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5	최대한 익명 인용을 배제한다.	공개되었을 때 취재원의 신변이 위험할 정도가 아니면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익명 인용을 하는 경우에도 인물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자세하게 제시한다.
6	자료의 출처를 독자들에게 투명하게 밝힌다.	독자들이 기자가 한 것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기자가 판정한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를 수 있는지 스스로 검증해 보도록 취재과정에서 획득했던 모든 정보를 최대한 공개한다.
7	판정결과는 가장 나중에 밝힌다.	팩트체크 기사의 서술은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밝힘으로써 판정결과에 대한 설득을 이끌어 내는 것이므로 판정결과는 마지막에 서술한다.
8	오류는 공개적으로 즉각 수정 한다.	오류는 독자들이 알 수 있게끔 공개적이고도 즉각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 2. 팩트체크 기사 사례

앞서 언급한 주요 원칙들을 비교적 준수한 몇 개 사례들을 살펴본다.

### 1) KBS의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미세먼지 관련 상대 후보 공략 검증

[팩트체크] 서울시장 토론 “미세먼지 난타전” 누가 사실?

어젯밤(30일) 열린 KBS 초청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의 핵심

공방 사안은 미세먼지 문제였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서울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

그래프를 제시하며 오세훈 전 시장 때 낮아졌던 미세먼지

농도가 박원순 후보 재임 시절 악화됐다고 공격했다.

- ① 입증 가능한 사실을 검증.

팩트체크 (1) “계속 나빠져” 무색 – 2017년 미세먼지 농도  
큰 폭 하락

김문수 후보는 서울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 그래프를 보여주며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계속 나빠지고—”라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가 제시한 국립환경과학원 자료를 보면,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박 시장 취임초기인 ▲ 2012년  $41\mu\text{g}/\text{m}^3$ 을 시작으로 ▲ 2013년  $45\mu\text{g}/\text{m}^3$  ▲ 2014년  $46\mu\text{g}/\text{m}^3$  ▲ 2015년  $45\mu\text{g}/\text{m}^3$  ▲ 2016년  $48\mu\text{g}/\text{m}^3$ 의 추이를 보인다.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이지만 2015년 감소한 데이터도 있다.

- ② 검증대상이 되는 주장을 한 최초 발언자로부터 주장의 근거를 확인.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공개한 ‘연도별 서울 미세먼지 추이’는 어떨까?

김 후보가 제시한 그래프 추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서울시 자료에는 2017년 미세먼지 농도까지 포함돼 있다. 2017년의 경우  $44\mu\text{g}/\text{m}^3$ 로 전년도  $48\mu\text{g}/\text{m}^3$ 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비교적 큰폭 하락했다. ‘ $48\mu\text{g}/\text{m}^3$ ’이라는 최고 정점 수치까지만 나와있는 김 후보 자료와 대비된다. 김 후보의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계속 나빠지고—” 주장을 다소 약화시키는 데이터다.

- ③ 발언자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다른 근거를 수용.

### 팩트 검증 결과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와 관련해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계속 나빠지고 …”라는 김문수 후보의 주장은 2017년  $4\mu\text{g}/\text{m}^3$ , 2015년  $1\mu\text{g}/\text{m}^3$  하락한 데이터가 있다는 점에서 ‘100% 팩트’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자료 기준으로 서울 미세먼지 농도가 ▲  $45\mu\text{g}/\text{m}^3$ (2013) ▲  $46\mu\text{g}/\text{m}^3$ (2014) ▲  $46\mu\text{g}/\text{m}^3$ (2015) ▲  $48\mu\text{g}/\text{m}^3$ (2016) ▲  $44\mu\text{g}/\text{m}^3$ (2017)의 추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나빠지고 있다”라기보다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팩트에 가깝다는 판단이다.

(KBS 2018년 5월 31일 보도 일부 인용)

④ 판정에 이르게 되는 증거들을 앞서 제시한 뒤 마지막에 판정결과를 제시하는 역 피라미드 뒤집기 서술형식.

⑤ 상이한 두 개 증거의 비교 통해 판단.

### ① 사실의 검증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가 “민주당의 박원순 후보 서울시장 재임 시절 미세먼지 농도가 더 나빠졌다”고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을 검증 대상으로 삼았다.

### ② 검증 대상이 되는 주장을 한 최초 발언자로부터 근거 확인

“박원순 후보 서울시장 재임 시절 미세먼지 농도가 더 나빠졌다”고 주장한 김문수 후보 측의 주장의 근거를 확인했다. 김 후보가 제시한 국립환경과학원 자료의 연도별 추이를 서술했다.

### ③ 발언 대상자의 주장과는 다른 출처의 정보 확인

김문수 후보 발언의 근거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측정한 미세먼지 수치였다. 그러나 KBS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제시한 수치를 추가적으로 검토했다.

#### ④ 판정결과를 결론 부분에 서술

역 피라미드 방식으로 결과를 선언적으로 앞에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판정에 이르게 된 과정을 서술한 뒤 마지막에 판정결과를 제시한다. 팩트체크의 중요한 기능은 어떠한 판정을 내려 검증 대상이 된 발언자를 평가하려는 것보다는 검증에 이르게 된 증거들을 제시하고 이를 읽어가는 독자들이 의견을 갖고 판단을 내리게 하려는 데 있다.

#### ⑤ 비교 혹은 삼각측정을 통한 판정

판정을 내릴 때 일방의 주장에 근거하지 않는다. 찬반 양론 혹은 발언자의 주장을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상이한 증거들이 있을 경우, 다양한 주장과 증거들을 청취하고 검토해서 진실을 삼각측정(triangulating the truth)한다.

KBS의 팩트체커는 김문수 후보의 주장이 2015년과 2017년의 측정치를 보았을 때 ‘100% 팩트’는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미세먼지 농도 연도별 추이가 김 후보의 주장처럼 계속 나빠지고 있기보다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평가를 근거로 김문수 후보의 주장에 대해 ‘대체로 사실’이라고 판정했다.

### 2) 뉴스톱의 서초구청장 당선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공약이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팩트체크

(중략) 서울에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당선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권자들이 소속정당을 따져 보지 않을 만큼 재선의 조 구청장이 재임 기간 중 열심히 잘 해 왔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이 추진 중인 반포주공아파트 주민들이 정부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불만을 품고 정부여당에 반대하며 조 후보에 표를 던졌다**는 주장도 있다. 뉴스톱에서 확인했다.

(중략)

① 검증대상을 왜 선정했는지를  
독자에게 밝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반포주공

1단지 3주구가 속한 반포본동 전체의 투표결과를 살펴보면 투표수 총 6151표 가운데, 한국당 조은희 후보는 3603표(58.6%)를, 민주당 이정근 후보가 2109표(34.3%), 득표했다. 조 후보(52.4%) 및 민주당 이 후보(41.1%) 득표율과 비교하면 서초구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조 후보에게 표가 더 나온 것은 사실이다.

- ② 검증의 증거를 하이퍼링크로 연결해 독자들도 검증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4년전 선거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다. 2014년 실시된 6대 지방선거에서 반포본동 총 투표수 6226표 가운데 조 후보는 3422표(55%)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곽세현 후보는 1659표(26.6%)를 얻었다. 즉, 반포본동 주민들은 조은희 후보에게 꾸준하게 55~59% 지지를 보인 것이다. 게다가 4년전과 비교한 표 증加分을 보면 조 후보가 181표를, 민주당 후보는 450표를 더 얻은 것으로 나타나 민주당 후보의 증加分이 더 높았다.

- ③ 결론에 이르기 까지 검증의 방법론을 자세히 서술.

(뉴스톱 2018년 6월 22일 보도 중 발췌)

## ① 검증대상 선정의 이유 밝힘

검증대상을 왜 선정했는가에 대해서는 항상 선택 편향(selection bias) 등의 논란이 제기된다. 이를 독자에게 투명하게 밝히는 것은 검증 결과에 대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검증대상의 선정에서 시민의 삶과 유관한 주제를 공정하게 선정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 ② 검증 자료를 공개

중요한 검증 근거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의 하이퍼링크를 제공해 독자들이 직접 팩트체커들이 수행한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여부를 검증할 수 있게

한다. 이는 미국의 폴리티팩트 등 주요한 팩트체커들과 국제팩트체킹 네트워크(IFCN)가 강조하는 투명한 취재원(source) 공개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 ③ 방법론의 공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의 방법론을 독자들에게 투명하게 밝힘으로써 논리의 타당성을 검증받도록 한다. 이 기사의 경우, 2018년 선거에서 조은희 후보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계있는 지역의 유권자로부터 더 많은 표를 얻은 것은 맞지만,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득표 추이에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선거에 패한 민주당 의원이 해당 지역에서 얻은 표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근거로, 초과이익 환수제 지역에서 표가 많이 나와 당선됐다는 주장의 근거가 희박함을 밝히고 있다.

## 3. 맷으며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 이제 막 도입되기 시작한 팩트체킹의 수행에 있어서 주요 원칙을 세워 보기 위한 것이었다. 5장의 팩트체커 인터뷰를 통해 확인했듯이 국내 언론계에서 팩트체킹은 시작됐지만, 어떠한 원칙을 견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명시적인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거나 팩트체커들이 이를 숙지하고 있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명시적인 원칙의 부재는 팩트체킹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즉 검증 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불신, 검증 취재 자료에 대한 의구심, 검증 방법론의 타당성에 대한 합의 부재 등 팩트체크가 수용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더 강화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 준용한 것은 현재의 한국의 팩트체킹 지형과 유사하게 언론사들이 팩트체크에 나서고 있는 미국의 팩트체크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삼고 있는 원칙이다. 큰 맥락에서 보아 한국에서 통용되기에 무리가 없지만, 한국의 취재현실에 비추어 볼 때 쉽게 실현되기 어려운 장벽도 있다. 일례로 취재 자료의 확보에서 팩트체커들은 어려움을 호소한다. 정부의 비공개 자료를 얻기가 쉽지 않은데다, 취재 당시 기명을 약속했던 취재원들도 보도의 시점에서는 익명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익명 취재원은 진실을 폭로할 수 없다”는 엄격한 미국 팩트체킹 규칙을 따르는 데에도 한계를 드러낸다.

그러나 요구되는 주요원칙을 현실에서 당장 수행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목표 점을 잊지 않고 원래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요원칙에 대한 끊임없는 주의와 일관된 실천이 필요하다. 이러한 원칙의 견지 없이는 팩트체킹도 뉴스의 소비자로부터 또 하나의 편향된 정보로 치부되는 ‘주창주의 저널리즘’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팩트체킹의 핵심원칙인 불편부당성과 투명성은 언론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덕목이다. 결국 팩트체킹이 좋은 저널리즘에 이르는 단 하나의 방법은 아니지만, 여러 혁신안 중에 시도해 볼 만한 하나의 길임은 분명하다.

## 참고문헌

- 김경모·박재영·배정근·이나연·이재경 (2018).『기사의 품질』.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마동훈·오택섭·김선혁 (2013).『저널리즘 공공성 실현을 위한 한국형 팩트체킹 모델 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 박아란 (2015).『미디어와 명예훼손』.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아란 (2016). 방송의 객관성에 대한 연구.〈한국언론학보〉, 60(6), 157~185.
- 박아란·김민정·최지선 (2017).『공인 보도와 언론의 자유』. 한국언론진흥재단.
- 박용상 (2008).『명예훼손법』. 현암사.
- 이승선 (2007). ‘공적인물’이 청구한 명예훼손 소송의 특성과 힘의: 방송사 사건을 중심으로.〈방송과 커뮤니케이션〉, 8(1), 96~131.
- 이재진 (2018).『언론과 공인』. 한양대학교 출판부.
- 정은령 (2017). 팩트체킹 뉴스 의미와 한계.〈관훈저널〉, 143, 19~25.

- Adair, B., & Holan, A. (2011, March 11). Remembering David Broder and his passion for Fact-Checking, *PolitiFact*. Retrieved from <http://www.politifact.com/truth-o-meter/article/2011/mar/11/remembering-david-broder/>.
- Amazeen, M. A. (2013). Making a difference? A critical assessment of fact-checking in 2012, *New America Foundation*, 1~40.
- Amazeen, M. A. (2015a). Developing an Ad-Reporting Typology: A network analysis approach to newspaper and fact-checker coverage of the 2008 presidential election.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92(3), 617~641.
- Amazeen, M. A. (2015b). Revisiting the epistemology of fact-checking. *Critical Review*, 27(1), 1~22.
- Amazeen, M. A. (2016). Checking the fact-checkers in 2008: Predicting political ad scrutiny and

- assessing consistency. *Journal of Political Marketing*, 15, 433–464.
- Dobbs, M. (2012). The rise of political fact-checking. New American Foundation.
- Graves, L. (2016). *Deciding what's true: the rise of political fact-checking in American journ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Graves, L. (2017). Anatomy of a fact checking: Objective practice and the contested epistemology of fact checking. *Communication, Culture & Critique*, 10, 518–537.
- Graves, L., & Cherubini, F. (2016). The rise of fact-checking sites in Europe. 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 Graves, L., & Glaisyer, T. (2012). The fact-checking universe in Spring 2012. New America.
- Mantzalis, A. (2016, May 31). Can the worldwide boom in the digital fact-checking make the leap to TV? *Poynter.org*, Retrieved from <https://www.poynter.org/news/can-worldwide-boom-digital-fact-checking-make-leap-tvleap/>.
- Marietta, M., Barker, D. C., & Bowser, T. (2015). Fact-checking polarized politics: Does the fact-check industry provide consistent guidance on disputed realities? *The Forum*, 13(4), 577–596. doi: 10.1515/for-2015-0040.
- Ostermeier, E. (2011). Selection bias? PolitiFact rates Republican statements as false at three times the rate of Democrats.
- Pingree, R. J., Brossard, D., & McLeod, D. M. (2014). Effects of journalistic adjudication on factual beliefs, news evaluations, information seeking, and epistemic political efficacy. *Mass Communication & Society*, 17(5), 615–638.
- Spivak, C. (2010). The fact-checking explosion: in a bitter political landscape marked by rampant allegations of questionable credibility, more and more news outlets are launching truth-squad operations. *American Journalism Review*, 32(4), 38–44.
- Uscinski, J. E., & Butler, R. W. (2013). The epistemology of fact checking. *Critical Review*, 25(2), 162–180.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주요 원칙